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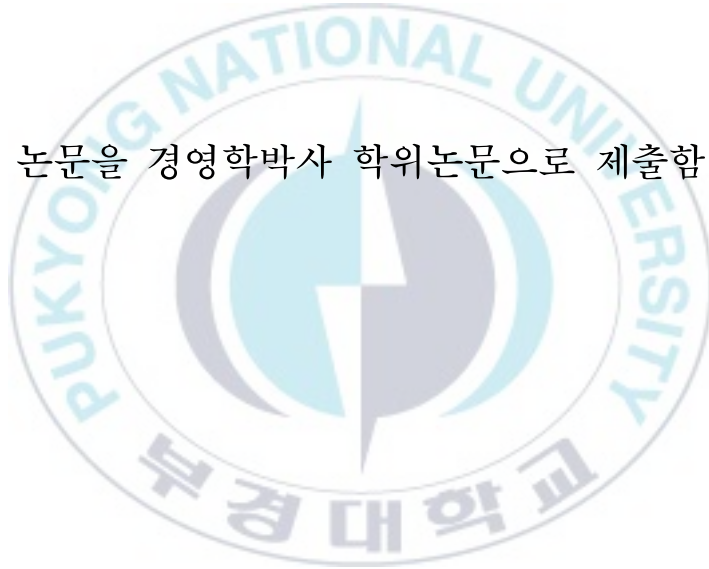
김효주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

지도교수 김 확 열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김 효 주

김효주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위 원 장 경영학박사 김 진 황



위 원 경영학박사 김 문 태



위 원 경영학박사 정 현 욱



위 원 경영학박사 이 진 수



위 원 경영학박사 김 학 열



목 차

Abstract	V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2.1 이론적 배경 검토	7
2.2 선행연구 검토	14
2.3 내부감사품질 측정	39
III. 연구설계	56
3.1 연구가설	56
3.2 연구모형 및 변수 측정	62
3.3 표본선정	72

IV. 실증분석	75
4.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75
4.2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의 관련성 검증	86
4.3 분석 결과 종합해석	100
V. 결론	102
5.1 연구요약	102
5.2 시사점 및 공헌점	104
5.3 향후 연구과제와 제언	105
참고문헌	108
국문초록	118
감사의 글	119

표 차 례

< 표 1 >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선행연구	20
< 표 2 > 감사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24
< 표 3 > 감사보수에 관한 선행연구	28
< 표 4 > 감사품질에 관한 선행연구	34
< 표 5 > 감사위험에 관한 선행연구	39
< 표 6 > 내부감사 성과측정	42
< 표 7 > 독립성 측정치	47
< 표 8 > 전문성 측정치	49
< 표 9 > 규모 측정치	51
< 표 10 > 범위 측정치	52
< 표 11 > 내부감사품질 특성 요약	54
< 표 12 > 통제변수 요약	68
< 표 13 > 표본선정 결과	73
< 표 14 > 표본의 산업별 분포	74
< 표 15 > 기술통계량	77
< 표 16 >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80
< 표 17 > 감사시간의 평균차이분석	82
< 표 18 > 감사보수의 평균차이분석	84
< 표 19 > 감사품질의 평균차이분석	85
< 표 20 > 감사위험의 평균차이분석	86

< 표 21 > 회귀분석 : 가설1의 검증결과	89
< 표 22 > 회귀분석 : 가설2의 검증결과	92
< 표 23 > 회귀분석 : 가설3의 검증결과	94
< 표 24 > 회귀분석 : 가설4의 검증결과	97
< 표 25 > RISK(감사위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9
< 표 26 > 분석 결과 종합	101



Internal Audit Quality and External Audit

Hyo Ju Kim

Department of Busines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udit quality and external audit by measuring internal audit quality. Specifically, it is to analyze whether the internal audit quality increases or decreases external audit time, audit fees, audit quality, and audit risk. External auditors review and comment on whether the entity has properly accounted for in accordance with accounting standards. The reason for strengthening audits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law is that the results of all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company ultimately appear in the figures in accounting. As external audits are important,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l audits increases day by day,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udit quality and external audits is timely.

This study is defined as IAQ by measuring internal audit quality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domestic standards and regulations on internal audit, and prior research. The primary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d IAQ and audit time, audit fees, audit quality, and audit risk is first analyzed. Secondly, in order to clearly demonstrate the IAQ, the study is defined in detail with independence, expertise, scale, and scope, and conducte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haracteristic and audit time, audit fee, audit quality, and audit risk.

We find the following empirical results. The internal audit quality(IAQ)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external audit time, audit fees, and audit risk. It means that a excellent internal audit quality can reduce external audit time, audit compensation, and audit risk. In the analysis by characteristics, Independence affects the reduction of audit time and audit fees, Expertise affects the reduction of audit risk, Scale affects the reduction of audit time and audit risk, and Scope affects the reduction of audit fees. We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if the internal audit quality is excellent, it contributes to the external audit, thereby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external audi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this study measures the internal audit quality by using the data disclosed in the business report as much as possible. It means that the foundation for internal audit quality e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n. Second, it prove the necessity for mutual cooperation and complementation between internal audits and external audits.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decision making by enterprises, auditors and regulator. Third, strengthening internal audits means investing in a greater value of the entity than to contribute to external audits.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업에 대한 감사관련 선행연구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감사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내부감사보다는 대부분 외부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외부감사는 기업 외부 감독기관으로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야 하지만, 간혹 경영자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하거나 계속 고용을 위해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하기도 하고, 회계부정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기업은 외부감사 외에도,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하고 이익을 지켜줄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기업 내에 둔다.

감사는 기업 조직의 필수기관으로 우리나라 상법¹⁾에 규정되어 있고,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대리문제를 감시하고 주주의

1) 상법개정내용 요약

연도	개정내용	관련 법령
1963년	감사를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도입	상법제정
1984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기업 : 감사 상설 기관화	상법 제 409조 제4항
1999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상법 제 415조 제2항의 1
2000년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 : 상근감사 의무화	상법 제 542조 10
2000년	대규모상장회사 :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대표는 사외이사	상법 제 542조 11 제2항 1, 2

이익과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 내부의 감사관련 기구로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감사위원회와 내부 감사부서가 있다. 내부감사기구인 비상근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는 그 구성과 고유한 특성이 다를지라도, 경영자를 감시하고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역할과 기능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확열과 김호주 2019a).

그러나 감사는 경영자와 유착관계가 있는 감사를 선임할 경우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기업에 상주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보수집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 기업 내에 상주하면서, 직무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경영자와 임직원의 업무를 감찰하고 부정과 비리를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한다. 내부감사는 자체감사 방법으로 상시로 시행되어 회계 부정·착오를 예방하고, 경영조직·업적에 대한 자기비판을 수행하며, 경영의 개선에 공헌함은 물론 외부감사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박정섭 2019).

미국은 2001년 Enron, Worldcom 사태를 겪고 2002년 Sabane-Oxley Act(SOX)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대우, SK 등의 회계부정 사건과 외환 위기를 겪으며 내부통제와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나 대우조선해양 등의 회계부정이 발생하고, 미국의 Arthur Andersen 회계법인, AIG보험사 등 회계부정 스캔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의 발생은 기업 외부기관의 감독과 사후적 조치로는 이미 늦기 때문에 내부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외부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는 한계가 있어 자체적 관리·감독의 필요로 내부감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신상훈과 김선미

2015).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는 모두 기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기능·영역·업무의 중점사항 등에서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외부감사는 업무범위 내에서 사후적 회계부정이나 오류발견 역할을 수행하는 회계감사가 주된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회계기준 및 규정 위반만 감독하는 법률적 책임을 지지만 처벌권한은 없다. 그러나 내부감사는 회계부정이나 오류의 사후적 발견은 물론 사전적 예방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외에 업무감사도 한다. 또한 법률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며,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부감사가 외부감사보다 효과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기업의 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외부감사와 내부감사가 상호보완 관계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어떠한 특성요인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대 감사의 주요 특징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상호 협력 및 보완이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중복을 우려하기보다는 감사기관 간의 업무연계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김흥기 2019). 이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는 궁극적으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공에 기여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의 본원적 의무는 기업의 시스템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제언하고 조직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감독하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내부감사의 현실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감사를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기업경비의 사적유용과 횡령 등을 조사하는데 그 역할을 한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부감사가 조직에 가치를 부가하고 기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기능의 활성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내부감사 활성화와 개선은 내부감사 평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알기 위해 내부감사품질의 측정과 평가는 필수적이라 하였다(Sally-Anne Pitt 2016; 신상훈과 김선미 2015; Gramling and Vandeveld 2006). 내부감사 평가를 통한 활성화와 개선은 외부감사와도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감사의 평가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학문적으로도 내부감사와 관련된 측정치(proxy)가 다양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내부감사 소관부처는 내부감사부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전까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에서만 내부감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받은 그 기업의 결과도 공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재무전문가와 일반인이 접촉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에도 내부감사 평가결과가 공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은 관심있는 기업의 내부감사부서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내부감사품질과 관련된 측정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타 권위있는 기관과 선행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방법론적으로 논리적 타당성이 담보된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고 내부감사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측정된 내부감사품질 변수를 활용하여 이들이 외부감사시간, 외부감사보수, 외부감사품질, 외부감사위험 등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즉,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의 관계성을 검증하여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기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상호 협력 및 연계

필요성을 도출하여 내부감사의 중요성과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부감사 품질을 다양하게 측정한 최초의 국내연구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시도와 결과는 후속 연구에 기준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내부감사 품질과 외부감사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수한 내부감사가 외부감사기관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1.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2009년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이후 보고서 작성년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독립변수인 내부감사 품질은 국제내부감사기구의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Sally-Anne Pitt의 내부감사 품질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보고서 및 김확열과 김효주(2019b)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측정한다.

종속변수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으로 하여 독립변수인 내부감사 품질과 이들 종속변수의 관계성을 살펴본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 있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사용하였다. 감사품질은 수정 Jones 모형으로 구한 재량적 발생액으로 한다. 감사위험은 감리지적, 재무제표수정,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감사위험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내부감사품질이 종속변수와 관계가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원인변수나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와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및 감사위험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선행연구는 이슈와 관련하여 2조 원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이슈 발생 2-3년 전·후를 분석하여 그 결과들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가증권 상장된 기업 전체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로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 관련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내부감사품을 측정한다. 제3장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표본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에서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제5장은 연구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공헌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서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검토

2.1.1.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감사에 대한 개념

“내부통제”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9’]의 정의에 의하면 내부통제가 직원의 위법 및 부당행위(횡령, 배임 등) 또는 내부정책 및 절차의 고의적인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주의, 태만, 판단상의 착오 또는 불분명한 지시에 의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또한 박태수의 내부통제평가와 적발감사 실무(2017)에서는 “기업(조직)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기업 자산이 오류나 부정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사람 간의 견제 활동”이라고 내부통제를 정의한다. 종합해보면, 내부통제는 내부감사를 포함한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14’]의 정의에 의하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내부감사”는 국제내부감사협회(IIA)에 “내부감사란 조직의 서비스 측면에서 조직의 업무를 검사 및 평가하기 위한 조직 내에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 기능이다. 내부감사의 목적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데 있다. 내부감사는 검토대상 업무의 분석, 평가, 건의,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무가 마무리된다. 내부감사의 목적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제고 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외부감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감사 혹은 강제감사임에 비해 내부감사는 경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감사이므로, 그 목적과 내용도 다양하다. 본래 협의의 내부감사는 내부통제조직의 일환으로서 회계자료 또는 재무제표의 허위 및 오류의 발견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감사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내부감사는 수학적 체크가 아닌 완전한 회사내부의 모든 기록에 대한 재무적·업무적 검열을 포함한다. 특히 경영관리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내부통제조직의 완전화를 위하는 기능을 하고, 재무제표 검증에 대한 공인회계사와 감사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정의한 내부감사와 관련된 용어²⁾는 ① ‘내부감사기구’, ② ‘내부감사부서’, ③ ‘준법지원인’이 있다(김확열과 김효주 2019b). 본 연구에서 내부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①내부감사기구’를 감사와 감사위원회 등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감사는 상법상 필수기관이고,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1984년 개정).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2009년 개정).

‘②내부감사부서’를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산하에 설치하고 이들을 보좌하는 실무업무 수행조직이라 정의하였다. 보통 감사인이라면 내부감사부서를 가리키고, 실무적으로 감사실 또는 윤리경영실 등의 명칭으로 운용되고 있다.

‘③준법지원인’은 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이 두도록 하였다(2012년 시행).

실무수행조직인 내부감사부서를 의미한다.

2.1.2. 내부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이사의 직무집행감독, 재무보고,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에 관한 감독, 외부감사 관련 업무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합의체이면서도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감독업무 직접 수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감사부서의 상시적인 지원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³⁾.

그러나 내부감사는 경영조직 내에 있는 것으로 경영자를 보조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경영관리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내부감사영역은 결정된다(박정섭 2019). 최근 기업들은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 명칭에서 ‘감사(監査)’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윤리경영실’ 및 ‘정도경영실’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⁴⁾. 따라서 내부감사가 경영진의 보조인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임직원들의 기업경비 사적유용 조사나 제보수사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내부감사의 정의를 조직의 업무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으로서 회계 부정·착오를 예방하고, 경영 개선에 공헌하고, 외부감사에 협력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내부감사의 기능을 기업의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기여함으로써 기업발전과 기업가치 증가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 하였다.

최근들어 부정행위가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경영진의 법률위반행위나 부정행위를 사후적 발견보다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3)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2018. 04, Vol. 6

4) 내부감사저널 2016, January

내부감사와 내부통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종전의 내부감사가 ‘사후적 적법성 검사’에서 최근에는 경영전략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사전적 타당성 검사’로 바뀌고 있다⁵⁾.

이와 같은 변화는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금까지 내부감사인인 수행하는 감사는 회계감사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기업체의 경영자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층에 조언한다. 심지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영감사(management audit)까지 내부감사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박정섭 2019).

내부감사와 관련한 또 다른 요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소통과 협력이다. 기업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외부감사는 한정된 기한 내에 회계자료를 다루어야 하므로, 내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조정과 협조를 통해 재무제표의 최종 작성에 간접적으로 참가한다. 외부감사는 내부감사를 활용하고, 내부감사 또한 외부감사를 활용한다면 중복 최소화 및 상호보완을 극대화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내부감사기구는 재무보고 감시·감독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인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때 내부감사기능이 효과적이면 통제위험이 높지 않게 된다⁶⁾.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인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은 감사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한다(김석웅과 유순미 2011).

또한 내부감사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모든 부서의 경영자에게 감사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부서의 경영자들이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도와준다. 내부감사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내부감사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

5) 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저널 2016 January p.69.

6) 감사저널 2017 봄호

신의 제공자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부감사가 나아갈 방향이다.

2.1.3 외부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는 일반 주주 뿐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및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재무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보고되는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의사결정은 재무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회계부정이 있다면 왜곡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와 기업과 외부감사인인 투자 철회, 불매운동 및 손해배상소송 피소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서 외부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외부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현 K-IFRS)에 맞게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내·외부 정보이용자는 재무정보를 작성·제공한 사람이 아닌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가 인증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인증업무가 감사이며, 그 인증업무 수행자가 감사인이다(지현미와 최현곤 2019).

외부감사는 중간감사나 분기검토에서 내부통제가 잘되고 있는지와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기말감사에서 재고자산, 이익, 매출 등이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잘 했는지와 최종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를 감사한다. 즉, 외부감사는 회계기간 중의 모든 활동이 합리적 절차에 의해 실행되었는지와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는지를 감사한다.

최근에 외부감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강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모든 활동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회계에 있는 수치로 귀결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와 회계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를 더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중시한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따라 외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기업⁷⁾의 범위도 더 넓어졌다.

그러나 외부감사의 재무보고 감사과정에는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방해하는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 첫째, 감사환경의 변화이다. 외감법의 개정⁸⁾과 K-IFRS도입⁹⁾은 감사인에게 더 많은 감사노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감사노력이 적게 투입되었을 때 감사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감사환경이 되었다. 또 감사시장의 경쟁은 외부감사인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고,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요구한다. 감사 강화가 외부감사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의견이 ‘감사’ 의견으로의 개정¹⁰⁾이다.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005년 6월 도입하여 1000억 원 이상 기업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령 제5조 요약 <외부감사대상>

①주권상장법인. 올해나 내년 상장예정인 법인

②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1. 전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2. 연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③소규모회사 중 비상장주식회사

1.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2.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3.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종업원 100명 이상. 1~4 중 2가지 이상 충족

④유한회사

1.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2.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3.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종업원 100명 이상. 1~4 중 3가지 이상 충족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개정. 2018.11.01. 시행.

9) K-IFRS 도입 2011년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2019년부터 순차적 적용(2019년-2조 원이상, 2020년-5천억 원 이상, 2022년-1천억 원 이상, 2023년-전체 상장사)

에 미국의 ‘감사’와 다르게 ‘검토’ 수준을 적용해왔다. 이와 같은 개정은 감사인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감사범위가 넓어지고 감사투입시간은 확대되고 감사위험은 더 커졌다. 감사인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감사투입시간이 늘어나고 감사위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포함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하게 된다(노준화와 배길수 2008).

셋째, 감사인의 독립성은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면서도 가장 확보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외부감사는 외부감사인 스스로가 직업윤리에 입각하여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외에 경영자문을 하거나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 독립성은 훼손된다. 이때 감사품질도 훼손될 수 있다(이창우 외 1997).

이런 이유로 외부감사인은 감사실패와 감사위험을 겪지 않기 위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하게 되고, 감사보수는 커지게 된다. 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변화들로 인해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감사위험에 대비하기 힘들어진다. 외부감사는 내부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중간감사, 분기감사, 기말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외부감사는 기중에 재고자산과 이익 및 매출관리 등에서 즉, 기업의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계절차를 준수하는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한계로 인해 내부감사의 폭넓은 협조를 필요로 한다. 감사환경의 변화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상호협력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 진다.

2.2 선행연구 검토

2.2.1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선행연구

가. 외국연구

외국의 경우 Wallace(1984)의 연구를 시작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Wallace(1984)는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투자로 내부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인인 신뢰할 재무제표 조사를 수행하여 외부감사시간과 외부감사보수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Felix et al.(2001)은 재무제표 감사에 내부감사기여도가 클수록 외부감사비용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내부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외부감사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부감사 기여가 외부감사 수수료의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감사품질에 투자하고 내부감사 이용가능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Al-Twajjry(2003)는 내부감사부서를 두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재무시스템과 통제를 통해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불법 예방과 탐지 및 자산의 보호에 주요 목적을 둔다. 둘째는 조직의 다양한 측면의 경제성,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성과감사를 하는 것이다. 내부감사부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감사부서와 나머지 조직과의 관계의 중요성이라 하였다.

Krishnan(2005)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와 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낮음을 실증하였다. 내부통제에 관한 정보는 얻기 어렵지만 감사인이 변경될 때 감사인이 지적하는 내부통제문제는 공개된다. 따라서 Krishnan(2005)은 내부통제가 약하면 경영자의 사기보고, 이익조정 등 부정적 결과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Gramling and Vandervelde(2006)는 내부감사기능의 품질요소를 평가하여 외부감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부감사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내부감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 감사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교육과 의사소통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를 적극 권장하여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Roussy and Brivot(2006)는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보고서가 재무제표 감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내부감사품질을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내부감사인은 기업 내 부정과 사기를 감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주장하였다.

Prawitt et al.(2009)은 내부감사기능(IAF)의 품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서 이익조정의 대응치로 비정상적 발생액과 채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의 두 가지를 사용하여 내부감사품질과 이익조정이 음(-)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높은 IAF의 기업이 부정적인 비정상 발생액이 적고, 채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정확하여 이익조정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IAF가 외부에 보고되는 재무제표 보고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은 회사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품질을 고려하여 내부감사기능을 개선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王守海와 楊亞軍(2010)는 중국감사기준 1411호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어떻게 조화되고 소통하는지 보여준다. 이들은 외부감사에 내부감

사인원이 더 많이 참여하고, 내부감사인인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질수록 인력의 질이 높아지므로 외부감사의 감사범위와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궁극적으로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의 작업부하를 줄이게 되고 이는 외부감사의 감사수수료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은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외부감사비용이 낮아짐을 실증하였다.

Abbott et al.(2012)은 내부감사기능(이하 'IAF'라 칭함)이 재무제표 감사지원에 대한 외부감사의 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를 감독할 때 더 독립적이었다. 내부감사에 투입된 예산은 내부감사의 노력에 사용된다. 내부감사인의 노력이란 자격, 훈련, 도구, 경험을 말하며 예산이 크면 내부감사인의 노력이 크다고 해석하였다. 내부감사의 특성이 우수하면 외부감사인인 내부감사에 의존하게 되어 외부감사의 작업량을 줄이게 되고 감사위험을 줄여 외부감사보수를 감소시킨다.

Mazza and Azzali(2015)는 내부감사품질이 내부통제결함(ICD)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내부감사의 절차를 계획(planning), 범위(scoping), 실사(testing) 및 감시(monitering)로 정의하고, 내부감사품질의 필수조건을 독립성과 역량이라 하였다. 분석결과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면 내부통제결함의 심각도가 감소하고, 중대한 결함과 약점이 감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통제결함의 지속성이 감소하였다. 내부통제결함의 감소는 이해관계자에게 안정적인 유용한 재무보고를 제공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Zain et al.(2015)은 내부감사기능(IAF)의 품질과 내부감사기여의 효과에 대해 실증하였다.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 업무에 의존하기 전에 IAF의 품질을 평가한다. 내부감사품질이 높을수록 내부감사의 기여도는 높아지고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의 업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즉, 외부감사인인 내부감사기여에 의존하는 정도는 내부감사품질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李嘉明(2016)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간의 조정이 현대의 감사 특징임을 제시하며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비용 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외부감사의 작업량을 줄이고, 외부감사의 감사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내부감사의 작업시간은 내부감사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부감사의 질이 높을수록 외부감사의 내부감사 활용도가 높다 하였다. 연구자는 내부감사품질이 높을수록 내부감사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외부감사비용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내부감사품질에 대한 의존이 외부감사프로세스 동안 외부감사 작업량을 줄이게 되어 외부감사수수료가 감소되는 것이다.

陶玉俠(2016)은 우수한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비용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내부감사품질을 독립성, 전문성, 규모 및 책임수권범위로 제시하였다. 내부 감사가 독립적이어야 다른 부서에 대해 객관적인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를 잘 발견할 수 있다. 내부감사의 보고는 CEO가 아닌 감사위원회에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내부 감사인의 전문 역량이 강화 될수록 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경영진의 회계 이익 왜곡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부감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책임수권범위를 들었다.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수권범위란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외에도 컨설팅,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및 도덕적 위험평가까지 넓히는 것을 말한다. 내부감사인의 수는 내부감사부서의 존재 효과를 나타내므로 내부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자의 부정과 기회주의 행동을 잘 인식하고 예방하며 감독과 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내부감사품질의 특성이 클수록 외부감사비용은 낮아짐을 실증하였다.

나. 국내연구

내부감사에 관한 국내연구는 내부감사 관련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이론연구가 대부분이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간의 상호 협력 및 보완이 현대 감사의 주요 특징(李嘉明 2016)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에서 내부감사는 물론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먼저, 공기업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신상훈과 김선미(2015)는 내부감사의 품질이 높을수록 공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익조정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2007년부터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가 도입되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증연구가 가능하였다. 이들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가 공기업 내부감사활동을 촉진하고, 책임성 확보와 내부 견제시스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신상훈과 차승민(2018)은 내부감사품질이 크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익추구 행위가 억제되어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이라 하였다.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도입으로 내부감사 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고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를 차단하여 조세회피를 감소시킨다. 나아가 내부감사품질의 향상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익성은 신장시켜 공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조세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상훈과 김선미(2015)의 연구와 신상훈과 차승민(2018)의 연구는 공기업의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를 내부감사품질로 사용하였다. 이는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기업의 내부감사품질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연구에서 외부감사보수나 감사시간 관련 연구 중 원인변수로 내부감사 품질을 다룬 실증연구로는 김확열과 김효주(2019b)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확열과 김효주(2019b)는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외부감사비용이 낮아짐을 실증하였다. 우수한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시간을 절약하여 감사보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감사가 독립적일 때와 내부감사의 책임수권범위가 넓을수록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국내연구를 종합하면 내부감사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고,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연구는 더욱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내부감사가 중요시되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상호 협력이 중요한 이때에 내부감사품을 측정하여 외부감사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사점이 크다.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선행연구는 내부감사가 우수하면 외부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감소하고, 내부통제위험이 감소하며,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래와 같이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표 1 >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 요약
Wallace(1984)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시간, 외부감사보수 절감
Felix et al.(2001)	내부감사기여도가 클수록 외부감사보수 감소
Gramling and vandervelde(2006)	외부감사는 내부감사품질을 평가하고, 품질이 우수할 때 내부감사에 의존
Roussy and Brivot(2006)	내부감사는 관리자, 명성, 전문성, 감독의 기준을 충족하고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일 때 양질의 업무 수행
Prawitt et al.(2009)	내부감사기능이 우수하면 이익조정 감소
王守海와 楊亞軍(2010)	우수한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시간, 범위를 축소
Zain et al.(2015)	내부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외부감사보수 감소
Mazza and Azzali(2015)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면 내부통제결함(ICD)이 감소
李嘉明(2016), 陶玉俠(2016)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의 작업부하를 줄여 외부감사보수를 감소. 외부감사의 효율성 향상.
신상훈과 김선미(2015)	우수한 내부감사품질이 이익조정 감소
신상훈과 차승민(2018)	내부감사품질이 크면 조세회피 감소
김확열과 김효주(2019)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면 외부감사비용 감소

2.2.2 외부감사에 관한 선행 연구

가. 감사시간과 관련된 연구

외부감사의 감사시간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의 감사시간 결정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업무의 복잡성, 자회사 수, 해외법인의 수, 연결법인 등이 감사시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권수영 외 2005; 최승호 2009). 이 외에 감사환경의 변화도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2011년 K-IFRS가 도입되었다. K-IFRS에서는 금융자산 등 손상차손인식, 연결재무제표 작성, 공정가치 평가 및 주식에 대한 검토·분석 등이 강화되었다. K-GAAP 규정보다 감사인의 업무량이 질적·양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영기 20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2018년 11월 개정되어 2019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감사’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감사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많은 감사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먼저, 내부감사와 감사시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Lee and Park(2016)은 내부감사인의 특성과 감사효율성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내부감사인 특성을 내부감사인 수, 내부감사보수, 회계전문가 및 법률전문가로 정의하고, 감사효율성의 대용치로 외부감사시간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내부감사인이 많을수록 외부감사시간이 감소하고, 재무와 회계 전문가도 외부감사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인의 수가 많다는 것은 내부감사인의 이용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고, 내부 감사인의 이용가능성이 클수록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기여도가 커지고 감사 효율성이 높아진다. 연구자들은 감사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부감사인 수와 전문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윤석 외(2018)는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의 규모가 내부통제 효과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부회계관리담당 인력 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내부통제수준이 향상되므로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낮으며, 회계오류 발생가능성도 낮다. 이 경우 기업은 적절한 업무분담과 회계이슈의 적시검토가 가능하므로 내부통제가 효과적이다. 내부회계담당인력 수를 감사시간 결정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담당

당인력의 규모가 클수록 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김동영(2019)은 경제정의지수(KEJI)가 우수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특성이 감사시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역량있는 담당자 보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점을 가질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연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특성을 담당자의 경력수, 담당자의 인원수 및 공인회계사 보유수로 나누어 감사시간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담당자의 경력과 담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감사시간은 줄어들었으나, 공인회계사수 보유수는 감사시간 감소와는 음(-)의 관계이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각 부서에 적절한 인원수와 경력자 및 회계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에 제시한 연구들은 내부감사인 수와 경력이 많을수록 외부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감사효율성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즉,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가 우수하면 외부감사시간을 줄여준다는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관련이 없거나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명곤 외(2008)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은 통제위험이 높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은 감사시간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감사시간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시행 초기인 점 및 감사인이 내부통제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노준화와 배길수(2008)는 감사환경 변화가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1999년 감사보수자율화는 가격경쟁의 심화를 가져왔고 감사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업무가 외부감사인에게

있어 감사투입시간을 가장 많이 확대하는 요소이다.

최승호(2009)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면 통제위험이 높게 평가되어 오히려 더 많은 감사노력을 기울이므로 감사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영기(2012)는 K-IFRS도입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늘리는지 검토하였다. K-IFRS 도입은 K-GAAP적용 때보다 감사인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감사시간은 증가하고 감사보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업은 감사업무가 증가하고 복잡하여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더라도 감사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감사인이 차후 K-IFRS 전면 도입 시 적절한 감사보수를 받지 못하면 감사투입자원을 줄이거나 대체 수입원을 찾게 되는 이유라고 정영기(2012)는 해석하였다.

양일수와 이재은(2016)은 K-IFRS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과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재량적발생액 절대값이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K-IFRS 도입 전·후 비교에서 도입 전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재량적발생액 절대값이 더 컸다. 이상 세 가지 값이 도입 전보다 도입 후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개선된 것으로 K-IFRS도입의 효과성을 실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외에도 감사시간 관련하여 이성욱 외(2014)는 횡령·배임사건의 발생연도와 직전연도에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노력으로 감사투입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감사시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내부감사가 우수

하면, 특히 내부감사인 수가 많으면 내부통제의 효율이 증가하고 감사시간은 감소한다. 일부는 내부감사와 감사시간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다. 반대로 내부감사가 취약하면 통제위험이 증가하여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또는 감사환경 변화(감사보수자율화, K-IFRS 도입)가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감사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감사시간 관련 연구는 일관된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감사시간의 증가 또는 감소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표 2 > 감사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 요약
Lee and Park(2016)	내부감사인 수가 많으면 감사시간 감소
서윤석 외(201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인력 규모가 클수록 내부통제 수준 향상, 감사시간 적게 투입하고 감사효율성 증가
김동영(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의 경력, 인원수가 클수록 감사시간 감소
이명곤 외(2008)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과 감사시간은 관련없음
노준화와 배길수(2008)	감사환경 변화(감사보수자율화)가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가 감사시간 확대요소
최승호(2009)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면 통제위험 증가하여 감사시간 증가
K-IFRS 도입(2011)	금융자산 손상차손 인식, 연결채무제표 작성, 공정가치 평가, 주식에 대한 검토·분석 강화
정영기(2012)	K-IFRS 도입이 감사인의 업무부담을 증가하여 감사시간 증가
양일수와 이재은(201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면 감사시간, 감사보수, 재량적 발생액 증가. K-IFRS 도입 후에 더 감소

나. 감사보수와 관련된 연구

Wallace(1984)는 기업 이사회는 외부감사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감사인을

교체하고자 하지만, 감사인은 교체된 초년도에 낮은 수수료로 고객을 유치하고 이후에 할인된 수수료를 회수하려 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감사비용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감사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때문에 교체 전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은 내부감사부서를 신설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부서를 보강하는 등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투자로 외부감사서비스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내부감사는 회계통제를 개선하고, 외부감사인이 신뢰할 재무조사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을 도와 외부감사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분석결과, 조사대상기업이 내부감사를 사용하면 현장방문 횟수를 줄여 감사인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내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의 감독하에 일할 때 더 효과적이고, 내부감사가 CPA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강렬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rawitt et al.(2011)은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의 시간과 노력을 대체함으로써 내부감사의 기여가 외부감사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들은 외부감사가 내부 감사인을 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외부 감사 수수료의 인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IAF가 외부감사 수행에서 외부감사를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외부감사의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부 감사 업무의 이용 자체는 외부 감사 수수료 인하와 관련되지 않았다. 이들은 내부감사가 외부감사를 직접 보조할 때 외부감사가 내부감사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업무에 의존하여 외부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내부감사가 잘 작동하면 외부감사보수가 낮아지는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내부감사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소송위험이나 기업실패 위험이 있거나 감사인 특성상 오히려 외부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반대의 선행연구도 있다.

권수영 외(2005)는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감사품질이 큰 big5 감사법인의 감사보수가 non-big5 감사법인보다 더 높았다. 그 이유는 big5 감사법인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big5 감사법인의 평판자체에서 연유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경태 외(2007)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감사보수를 감사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반영되고 있는 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2005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위험에 노출된 회계법인은 소송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감사품질에 대한 명성(평판)이 손상되어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투자자는 부실감사가 되고 해당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면 부실감사로 인해 입게된 금전적 피해의 보상에 대해 능력 없는 기업보다 배상 능력 있는 감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된다. 연구결과 소송위험이 증가하면 명성손상 등을 반영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수임을 결정할 때 소송위험을 사전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명곤 외(2008)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의 경우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기업실패 위험이 높아 할증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신용준과 김은(2010)은 소송위험의 대응치로 재무제표 왜곡가능성 확률과 신용평가점수를 사용하고, 재무위험의 대응치로 한국시장의 도산가능성을 나타내는 K-Score(부실예측점수)¹¹⁾를 사용하여 소송위험과 재무위험이

11) K-Score는 Altman(1996)이 한국시장을 분석하고 제시한 도산가능성을 나타낸 부실예측지수이다.

감사보수와 관련있는 지 분석하였다. 감사인의 소송위험 최소화 노력은 감사시간을 늘리게 되고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분석결과,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이 클수록 감사실패로 인한 소송위험이 커지므로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하고 그 결과 감사보수를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Score의 값이 크면 즉, 재무건전성이 높으면 소송위험은 낮아지고 감사보수도 따라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인들이 감사계약에 감사대상기업의 소송위험을 사전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태섭(2013)은 전기에 횡령·배임이 있는 기업의 당기 감사보수가 증가하는지,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에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감사위험과 소송위험의 증가에 대비하기 때문에 당기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기에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미래의 소송위험에 대비해 증거수집 등 감사노력을 추가로 투입하므로 당기에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기업이 대규모기업보다 횡령·배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산대비 횡령·배임 금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였다. 따라서 감사품질이 높은 big4 감사법인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감사하므로 위험프리미엄을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형 감사법인보다 감사보수를 증가시키지 않았다.

박재환과 김승준(2015)은 기업실패 위험과 소송위험 외에 비정상적인 내부자거래도 피감사법인의 위험요소로 보았다. 내부자거래란 기업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서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호재나 악재보다 빠른 거래를 할 수 있어 사적이득을 취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감사인은 내부자거래를 감사위험으로 인식하여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기업의 위험수준이 높은 경우 내부자 순매도는 감사위험으

로 인식되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증가시킨다.

배길수와 최승욱(2019)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호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지불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대리인 비용이 높고 감사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프리미엄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보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감사보수는 경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인을 도와 외부감사인의 노력과 시간을 대체하므로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연구와 반면에 감사위험이 증가하면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감사위험은 소송위험, 횡령·배임, 비정상적 내부자거래, 대기업집단 등이다. 이외에 감사인 특성(BIG5)에 따라서도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다.

< 표 3 > 감사보수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 요약
Wallace(1984)	내부감사부서 신설과 보강으로 외부감사보수 감소. 내부감사가 회계통제를 개선하고 외부감사인을 도와 감사시간 절약, 감사비용 감소
Prawitt et al.(2009)	내부감사인을 보조인으로 사용시 외부감사인의 시간과 노력을 대체하여 외부감사비용 감소
권수영 외(2005)	BIG5 감사법인이 감사시간을 더 투입할 뿐만 아니라, 평판의 영향으로 감사보수 증가
이경태 외(2007)	집단소송제 도입 후 소송위험이 클수록 감사보수 증가
이명곤 외(2008)	내부회계관리 취약점이 감사보수 증가
신용준과 김은(2010)	소송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감사시간을 늘려 감사보수 증가
정태섭(2013)	횡령·배임이 있는 기업이 감사위험과 소송위험의 증가에 대비하기 때문에 감사보수 증가
박재환과 김승준(2015)	비정상적 내부자거래가 감사위험으로 인식되어 감사시간, 감사보수 증가
배길수와 최승욱(2019)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대리인비용이 높아 감사위험이 크므로 위험프리미엄 지급하여 감사보수 증가

다. 감사품질과 관련된 연구

감사품질이란 DeAngelo(1981)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이란 “특정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제도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할 확률과 이러한 발견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확률의 결합 확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감사결과가 감사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때 그 감사품질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감사품질이 좋다는 것은 감사인에게는 모든 감사업무 종료 후 감사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는 공시된 회계와 재무정보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Angelo(1981)는 대규모 감사법인이 우수한 감사품질의 제공과 관련 있음을 실증하였다. 소유자와 경영자 간 대리인 비용이 높은 기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감사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하려 한다. 이때 대규모 감사법인은 고객이 많아 준지대를 많이 받고 받은 준지대가 담보역할을 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Palmrose(1986)는 감사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워 감사인 규모를 감사서비스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감사서비스의 품질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big8 감사법인이 non-big8 감사법인보다 감사품질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Goodwin and Kent(2006)는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감사보수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고, 회의가 빈번할 때, 내부감사를 사용할 때 높아진다. 즉, 감사위원회가 테스트를 잘할 때와 내부감사를 더 많이 사용할 때 감사보수는 높고, 감사보수가 높으면 감사품질이 높다.

정재욱 외(2009)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감사특성으로 하여 재량적 받

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감사시간은 음(-)의 관계, 감사보수는 양(+)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품질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결과의 의미는 감사노력을 많이 할수록 감사품질은 좋아지지만, 초과적 감사보수를 수령하게 되면 감사인에게 준지대가 발생하여 독립성이 영향을 받게되어 오히려 감사품질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박진우(2011)는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산감사기법을 이용한 내부감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산감사기법을 활용한 내부감사 수행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산감사로 내부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다. 감사품질은 수행연수가 길수록,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많을수록, 교육 실시 후일수록 향상되었다. 이 외에도 전산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Yasin and Nelson(2012)은 외부감사품질의 대용치를 외부감사시간으로 하고 내부감사비용의 대용치는 내부감사기구의 규모(size)로 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비용과 외부감사품질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감사기구의 규모가 클수록 외부감사품질이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자회사가 많고 복잡성이 높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감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런 기업은 내부감사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 비용이 많아지고, 외부감사수수료도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외부감사품질은 높아진다.

정재연(2012)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감사인 규모가 큰 대형회계법인이 회계오류보고를 적게 하여 감사품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감사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여도 대형회계법인이 높은 감사품질을 보여주었다.

류승우 외(2015)는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지 조사하였다. 감사품질은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감사인의 노력인 감사투입시간이 늘어날수록 재량적발생액은 억제되어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심리시간도 재량적발생액을 억제하여 감사품질이 증가한다.

정석우와 정광화(2015)는 내부심리업무는 감사보고시차로 하고 감사품질은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내부심리업무와 감사품을 조사하였다. 감사보고시차란 현장감사 철수일에서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미해결사항에 대해서 개별 감사팀과 내부심리실이 계속 감사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감사노력은 감사시간 외에도 감사보고시차까지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분석결과 감사보고시차가 긴 경우 재량적발생액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차원에서 감사노력(내부심리업무)을 투입할수록 감사품질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류예린 외(2018)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수준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내부회계담당인력수와 공인회계사 수로 측정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수준이 높은 기업이 높은 감사품을 나타냈다. 내부통제제도인 내부회계관리·운용조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은 기업이 외부감사의 품질 향상에도 더 높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영 외(2018)는 감사품질 저하현상이 나타날 때 감사파트너의 감사노력이 감사품질 저하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파트너가 감사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하면 감사품질의 저하를 완화하는 것을 검증하여 계속감사시간의 변화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병욱(2018)은 감사시간이 증가하면 감사품질이 증가하였다.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세무조사의 과세위험이 낮아져 세무조사 가능성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현저히 개선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감사노력이 큰 것으로 감사품질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품질이 낮아지는 연구들도 있어 정리하였다.

마희영 외(2012b)는 감사품질을 오류의 적발 가능성과 발견 오류의 보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가 감사품질을 감사인규모, 산업전문성, 감사의견, 소송여부, 재량적발생액 및 이익반응계수 등을 사용한 것과 달리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을 대용치로 하여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기간에 비정상 감사보수는 높고 비정상 감사시간은 낮았다. 감사인 노력은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고 감사보수는 과다하게 받으므로 경제적 의존 관계가 성립하여 감사품질이 낮았다. 이 기간에 이익조정도 있었다. 이런 결과는 사전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으면 차후에 소송과 상장폐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기업이 감사품질이 낮고, 감사품질이 낮은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다는 것을 사전적, 사후적 징후로 알 수 있다.

하석태와 조성표(2018)는 감사인이 감사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당해 감사인의 고객기업인 피감사 기업들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명성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감사실패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므로 다른 감사인의 감사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실패는 당해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법인 전반의 감사품질에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남철(2018)은 감사시간 공시 불일치를 감사인이 감사위험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공시불일치는 재량적 발생액과 양(+)의 관련을 보여 감사품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공시불일치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공시불일치

는 감사인에게 잠정적 위험요소로 감사인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감사품질이 악화된다.

이 외에도, 감사의견 구매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면 감사품질이 하락한다는 최종학과 정희선(2015)의 연구와 시장점유율이 큰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면 의존도가 높아져 감사품질이 저해된다는 이우재와 정석우(2016)의 연구도 감사품질 하락과 관련있다. 정태진 외(2019)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내부통제제도나 심리실제도 등의 보완과 강화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 외부감사품질은 여러 가지로 측정되고 있다. 감사품질 관련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이 독립변수일 때 감사인규모, 산업전문성, 감사보수, 감사시간을 감사품질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DeAngelo 1981), 감사품질이 종속변수일 때는 주로 재량적발생을 사용하였다. 종합적 결과는 원인변수에 따라 외부감사품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역으로 낮아질 수도 있음이 확인되지만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품질 관련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감사품질 관련 선행연구를 아래 표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감사품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연구와 감사품질이 감소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원인은 내부감사나 내부통제가 우수할 때, 감사보수가 클 때, 감사인의 내부심리 시간이 클 때, 감사인 인원수가 많고 전문가이거나 대규모 회계법인일 때이다. 반면에 감사품질이 감소하는 원인은 분식회계, 감사시간 공시불일치, 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교체, 시장점유율이 큰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 구매 등이다.

< 표 4 > 감사품질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 요약
DeAngelo(1981) Palmrose(1986), 정재연(2012)	대규모 감사법인이 우수한 감사품질 제공
Goodwin and Kent(2006)	감사보수가 클수록 감사품질 증가
Yasin and Neison(2012)	내부감사기구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증가
류승우 외(2015) 정석우와 정광화(2015)	내부심리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 증가
류예린 외(2018)	내부회계관리담당인력수, 공인회계사수가 클수록 감사 품질 향상
정태진 외(2019)	내부통제제도나 심리실제도의 보완·강화가 감사품질 향상
마희영 외(2012)	분식회계 우려시 감사품질 낮고, 감사품질 낮으면 분 식회계 발생
하석태와 조성표(2018)	감사인의 감사실패가 감사품질 하락과 명성전이효과 초래
정남철(2018)	감사시간 공시불일치가 잠정적 감사위험으로 감사품 질 악화
최종학과 정희선(2015)	감사의견 구매목적으로 감사인 교체시 감사품질 하락
이우재와 정석우(2016)	시장점유율이 큰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 구매시 의 존도 높아져 감사품질 저해

라. 감사위험과 관련된 연구

감사위험(audit risk)이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박재완 외 2010).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감사위험의 대응치를 재량적발생액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재량적발생액은 측정오차문제로 실무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마희영 외 2012b). 또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 연구

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므로 새로운 감사품질의 대용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현진 외 2013).

최근에 감사위험으로 사용할 만한 것들은 감리지적, 감사 부적정 의견, 소송사건, 재무제표수정, 횡령·배임 및 상장폐지실질심사 등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첫 번째 감사위험 측정치는 감리지적이다. 감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재점검하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을 공시한 것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감리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재무정보의 질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리지적 여부는 재무보고의 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측정치이며 재량적발생액보다 측정오차 문제도 덜 심각하다(마희영 외 2012a).

마희영 외(2012a)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보수는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높은 감사서비스는 높은 감사보수로 이어지고 높은 감사품질로 나타난다. 간혹 과도한 감사보수는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켜 감사품질 저하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감사인의 노력을 나타내는 감사투입시간이 많을수록 오류 발견 가능성이 높고 보고되는 재무정보의 질은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유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감사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비정상감사시간과 감리지적 여부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감사인이 감사에 노력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감사품질은 높아지고 감리지적 가능성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김현진 외(2013)는 감리지적 예측확률이 낮으면 재량적 발생액이 낮게 나타나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더 높음을 실증하였다. 연구자들은 감리지적 예측확률을 먼저 구하였다. 감리지적 예측확률은 BIG4감사법인, 충분한 감사인력을 보유, 시장점유율, 교육훈련비 지출,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낮고, 회계법인의 지분이 집중될수록, 공인회계사의 경력이 길수록 높게 나

타났다. 감리지적 예측확률이 낮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재량적발생액은 낮게 나타났다.

Caplan(1999)은 내부통제가 취약하면 감사인의 감사실패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감사인은 부정위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감사위험 측정치 두 번째는 재무제표 수정이다.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는 감사기준서 제5호에서 오류수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명곤 외(2019)는 내부감시비용이 크면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작고, 외부감시비용이 크면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더 커지는 것을 실증하였다. 외부감사의 감사 전 당기순이익과 감사 후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재무제표 수정 정도이고, 이 차이가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보고 품질을 판단할 근거이다.

분석결과, 내부감시가 효율적일 때 의견불일치는 줄어 수정은 감소하고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외부감시가 효율적일 때 재무제표의 왜곡된 수치를 발견하므로, 이 때 의견불일치는 증가하지만 감사품질은 높아진다. 분석결과를 기업이 투입하는 내부감시비용과 외부감시비용이 낮을 경우 재무보고 품질이 훼손되고, 높을 경우는 내부감시와 외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자의 기회주의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김지령과 권선국(2013)은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기업특성 연구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업일수록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기오류수정을 재작성할 가능성은 동

일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감사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금감원이 최근 무작위 표본 추출을 줄이고 대신 횡령·배임 공시, 잦은 대주주 변경 등 위험요소가 큰 집단을 추출하여 감리업무를 실시한 결과 부정회계 지적비율이 2010년 17.5%에서 2011년 30.7%로 높아졌다. 이런 결과는 고의적인 오류와 오류수정이 회계부정 및 감리대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오류수정 회계처리는 회계분식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Myllymaki(2014)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들은 취약점이 개선된 이후에도 이미 보고된 오류 때문에 재무제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재무보고품질은 내부통제 의견이 적정한 기업들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감사위험 측정치 세 번째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이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원인 행위가 발생할 때,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김승열 2010). 상장폐지 요건은 형식심사요건과 실질심사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심사대상은 주된 영업의 정지, 불성실공시, 허위기재, 회생절차의 개별 요건과 상장폐지기준의 회피, 횡령·배임, 분식회계, 기타 투자자 보호의 종합요건이 있다(김문태와 이지현 2012).

김문태와 이지현(2012)은 상장요건에 대한 형식적 미흡 요건을 개선하지 못하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왜냐하면 상장폐지 기업은 자금유용, 회사 담보제공, 채무보증, 임의적 어음 발행 등이 횡령 및 배임과 관련성이 크고, 이런 문제는 경영자와 대주주 개인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김현진(2014)의 연구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기업실패 가능성을 높게 한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

은 기업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검증하였다.

박성환 외(2011)는 상장폐지의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식별하였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재량적 발생액이 크면 상장폐지 위험이 크지만, 매출액 성장률과 배당금 지급은 상장폐지 위험이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연화(2014)도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이 저조한 영업실적을 회피하여 보고할 목적으로 3년($t-3$)과 2년($t-2$) 전에 감사인 교체하면서 이익조정을 하였다. 이는 덜 보수적인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구매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석근 외(2016)는 상장폐지 전에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고자 이익증대의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어 회계정보가 기업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유가증권기업보다 코스닥기업과 non-big4 회계법인 감사인인 경우 더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 기업과 big4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만조(2018)는 상장폐지 기업은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고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 낮아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장폐지 위험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높인다. 감사인은 상장폐지 위험을 감사위험으로 인지하고 감사투입 노력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도 높아진다. 연구자는 상장폐지 위험을 감사위험으로 사용한 점, 감사보수는 초기에는 감사노력의 영향을 받지만 이후에는 위험프리미엄도 반영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연구에서 위험프리미엄은 시간당감사보수를 사용하였다.

감사위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본문에서는 감사위험 측정치 별로 서술하였

으나, 감사위험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 구분하여 아래 표로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감사위험은 내부감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때와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이 우수할 때 및 감사서비스가 우수할 때 감소한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가 취약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상장폐지 위험이 있으면 감사위험이 증가한다.

< 표 5 > 감사위험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 요약
박재완 외(2010)	감사위험이란—중요하게 왜곡 표시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
마희영 외(2012)	높은 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 증가에 영향.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감사품질은 높고, 감리지적은 낮아짐
김현진 외(2013)	감리지적 예측확률이 낮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제한
김현진(2014)	내부회계관리 운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이 기업실패 가능성 감소
이명곤 외(2019)	내부감사비용이 크면 외부감사와 의견불일치가 줄어, 재무제표 수정은 줄고 신뢰성은 증가
Caplan(1999)	내부통제가 취약할수록 감사실패 위험이 증가
박성환 외(2011)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은 상장폐지 위험증가
김지령과 권선국(2013)	재무구조 취약하고 경영성과 부진 기업이 재무제표 재작성 가능성 높다. 오류수정 회계처리는 분식회계의 유력한 증거
Myllymaki(2014)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 기업은 재무제표 수정 가능성 증가
한만조(2018)	상장폐지위험 기업은 이익조정 가능성 높아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증가

2.3 내부감사품질 측정

내부감사품질에 관해 참조할 문헌은 국제내부감사기구(IIA)의 국제내부 감사직무수행기준(IPPF),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Sally-Anne Pitt(2016) 내부감사품질관리, 금융감독원 회계포털,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이 있다.

2.3.1 국제내부감사기구(International Internal Audit : IIA)의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 IPPF)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이하 ‘IPPF’라 칭함)¹²⁾은 일반기준, 실행기준, 적용기준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준은 조직과 개인의 속성으로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품질보증 및 개선프로그램)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실행기준은 내부감사활동의 성격을 나타내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공한다. 즉, 실행기준은 내부감사활동의 관리, 감사업무, 감사업무계획, 감사업무 수행, 감사업무 보고, 사후관리, 중역의 위험 수용 해결에 관해 제시한다.

적용기준은 일반기준과 실행기준에 적용되며, 검증활동과 컨설팅활동에 적용할 요건을 제공한다. 검증서비스는 내부감사인인 조직, 업무, 기능,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기타 부속사항에 관해 의견 또는 결론을 제공하기 위해 증빙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것을 포함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조언적 성격이며,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고객의 특별한 요청으로 수행

12)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IPPF가 시행된다.

된다.

요약하면, 국제내부감사기준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계획, 지배구조·위험관리·통제의 감사업무, 감사수행결과보고,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2.3.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은 일반기준과 실행기준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준은 감사담당자등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및 청렴의무에 대해 제시한다. 실행기준은 감사계획수립, 감사실시, 감사증거와 판단, 감사결과보고 및 처리기준, 사후관리에 대해 제시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도 독립성, 전문성, 감사계획, 감사범위, 처벌기준, 이행결과에 대해 규정한다.

2.3.3 Sally-Anne Pitt(2016) 내부감사품질관리

Sally-Anne Pitt(2016)는 내부감사의 중심목적은 경영진이 운영상 결과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였고, 내부감사의 궁극목적은 조직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내부감사는 국가, 조직, 감사업무의 성격에 따라 스타일과 접근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저자는 내부감사품질의 내용으로 내부감사 전략과 계획수립, 책임영역과 작업의 성격, 내부감사 규정, 내부감사 직원 배치 및 내부감사 실무 등을 제시한다. 또 품질이란 기준 준수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기반한 품질이 되어야 하고, 품질의 측정에 내부감사기능의 효율성과 효과성 뿐 아

나라 투입물의 적정성까지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저자는 내부감사품질의 성과측정¹³⁾을 투입물의 적정성, 활동들의 효율성, 활동들의 효과성, 산출물, 결과(만족, 커버) 등으로 제시하였다.

< 표 6 > 내부감사 성과측정

항 목	내 용
투입물의 적정성	내부감사 직원 수, 예산, 직원의 업무 경험, 자격증 보유직원 비율
활동들의 효율성	감사당 평균비용, 구성원 1인당 평균비용, 실제 사용 시간, 직접 감사시간 비율, 활동별 시간 비율, 감사계획 완료 비율
활동들의 효과성	직무능력 개발시간, 보증 및 개선 활동, 반복적인 발견사항 수, 권고사항 실행 비율, 경영진의 요청 수, 요청에 대한 적시성, 고객 만족 감사
내부감사의 산출물	고위 경영진과의 회의 횟수, 연례/요약 보고서, 완료된 감사의 수, 보증 작업의 수, 컨설팅 작업의 수
내부감사의 결과	가치에 관한 조직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 감사위원회와 고위 경영진의 만족, 조직의 감사 커버비율, 전략적 리스크 감사비율, 운영리스크 감사비율.

저자는 독립성에 대해 내부감사의 최고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줄 계층에 보고하는 것이라 하였다. 기능상으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상으로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독립성 확보에 이상적이라 하였다. 또한 책임영역에 있어서 덜 성숙한 조직은 보증(assurance) 제공과 표준준수(compliance)에 중점을 두고, 성숙한 조직과 경영진을 신뢰하는 조직의 내부감사는 전략적 조언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Sally-Anne Pitt(2016)도 내부감사품질 성과측정에 대해 독립성, 전문성, 인원, 예산, 감

13) 출처 : Sally-Anne Pitt(2016) 내부감사품질관리. 내용을 표로 정리함.

사수행결과보고, 보증과 컨설팅, 기대충족을 주장한다.

2.3.4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금융감독원 회계 포털은 ‘내부감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황성식 2001)’에서 내부감사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내부감사 조직은 경영진에 의해 고용되지만, 경영진의 행동을 감시해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 피감사인, 대상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보고라인은 기본적인 조직구조와 별개로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는 보고대상 중 예산과 성과평가는 CFO에게 하고, 감사의 정책과 방향은 감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경영진과 감사위원회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임명 또는 해임하는 것은 독립성을 강화하게 된다.

또, 내부감사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감사목표, 연간 감사계획, 인력계획, 예산 및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감사계획은 효율적인 내부감사 자원활용 목적과 동시에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내부감사 직무영역도 부정적발 등의 업무감사는 물론 각종 업무성과 평가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업무성과 평가의 종류에는 내부통제 평가, 규정과 법규의 준수 여부 평가, 업무 과정 효율성 평가, 재무정보의 신뢰성 평가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내부감사 효율적 운영 방안에도 독립성, 전문성, 직무영역, 감사계획, 예산, 인력, 업무범위, 감사업무수행, 감사부서관리가 포함되었다.

2.3.5 내부감사품질과 관련된 선행연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그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할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이와 동시에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을 가질 때 독립성이 확보된다 하였다.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¹⁴⁾은 ‘2017년 상장법인의 내부감사부서 편제 현황’을 보고하였다. 보고서는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이 아니고 대표이사 직속인 경영라인이면 독립성이 훼손된다 하였다. 보고라인이 감사위원회 소속일 때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가 공시한 공개 자료인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1) 내부감사부서 보유현황 2) 내부감사부서의 인사상 신분보장 3) 내부감사부서의 감사보고서로 독립성을 측정하였다.

Felix et al.(2001)은 내부감사 기여의 결정요인을 내부감사품질, 내부감사위험 수준, 내부감사의 이용가능성, 내부감사자와 외부감사자 간의 조정범위라 하였다. 내부감사의 노력이 감사보고서 작성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된 감사노력을 최소화하여 감사효율성을 높인다.

Al-Twaijry(2003)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수행된 내부감사 작업의 범위, 내부감사부서의 관리 등 4개를 설문과 인터뷰로 측정하였다. 인터뷰 응답에서 업무 범위는 자신의 내부감사부서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큼 크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회계감사나 타부서의 내부통제절차를 확인하는 정도라 하였다. 적정한 규모와 예산이 확보될 때 업무 범위도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Gramling and Vandervelde(2006)는 내부감사기능의 품질요소를 역량(교

14) 감사위원회 저널 Vol. 6 May 2018

육정도, 자격인증), 객관성(보고관계, 내부감사인 고용담당자) 및 작업품질(감사프로그램, 업무범위)로 판단하였다.

Prawitt et al.(2009)은 미국 내부감사사 협회의 자료를 이용해 내부감사 품질을 6가지로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 여섯 가지는 감사인의 역량(감사인의 경험 및 전문자격증 보유 여부와 교육 훈련), 객관성(감사위원회에 보고), 시간(재무감사 수행 시간) 및 예산(내부감사부서예산)이다. 측정한 내부감사품질이 이익조정과 음(-)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Zain et al.(2015)은 내부감사기능(IAF)의 품질요소로 객관성, 기술적 역량, 전문적 관리, 의사소통, 보증과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다양하고 넓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였다. 내부감사기능의 품질이 외부감사인의 내부감사인에 의존 정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李嘉明(2016)과 王守海와 楊亞軍(2010)는 내부감사품질의 측정을 독립성, 전문능력 및 규모로 하고, 陶玉俠(2016)은 독립성, 전문능력, 규모 및 책임수권범위로 하였다. 이들은 내부감사가 경영진의 관리 하에 있으면 간섭을 받아 객관성이 떨어지고, 보고소속이 감사위원회나 이사회이면 독립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전문성은 CPA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고, 규모는 내부감사 인원수로 측정하였다. 책임수권범위는 내부감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며, 회계감사 외에도 국제내부감사기준(IPPE)의 컨설팅, 부가가치기능, 재무, 회계,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업지배구조 및 도덕적 위험관리를 포함한다.

Roussy and Brivot(2016)는 내부감사인은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감사위원회의 보증이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였다.

Raiborn et al.(2017)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이란 경영진이나 다른 조직 직원의 간섭없이 자유롭고 객관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말한다. 내부감사 기

능의 독립성은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향상된다고 하였다.

김확열과 김효주(2019b)는 국내연구로는 처음으로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이들은 내부감사품질을 독립성, 규모, 전문성 및 책임수권범위로 측정하여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독립성은 경영진이 아닌 감사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고, 규모는 내부감사인 수로 하고, 전문성은 CPA자격증 보유여부와 감사인 경력을 중위수로 하였으며, 책임수권범위는 컨설팅을 수행여부와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국내의 감사보수 결정모형에 관해 최관과 백원선(1998)은 기업규모, 감사의 복잡성, 감사위험 및 산업구분으로 하였다. 권수영 외(2005)는 기업규모, 감사위험, 영업의 복잡성, 수익성, 감사인의 숙련도, 대형회계법인 제휴 여부, 초도감사 및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2019년 08월 19일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을 최종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연결 여부, 자회사 수, 위험계정 비중, 지주사, 핵심감사제, 당기순손실, 비적정 의견 및 초도감사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2.3.6 내부감사품질 측정

본 연구는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내부감사기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금융감독원 회계포털 보고서와 김확열과 김효주(2019b) 연구에서 측정한 값을 기초로 더 타당성 있는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부감사품질의 측정치를 독립성, 전문성, 규모로 인원수와 예산, 업무

범위 및 사후관리로 간주될 수 있다.

첫째, 독립성의 측정이다. IIA의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 1100은 독립성이란 내부감사활동을 위협하거나 최고 감사책임자가 편향되지 않게 내부감사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 표 7 > 독립성 측정치

규정	독립성
IIA	1. 조직의 독립성(이사회에 직접 보고, 의견교환) 2. 개인의 객관성(외양, 사실에 대한 독립성) 3. 감사범위 결정, 감사업무 수행, 감사결과 보고에 간섭 배제 4. 보증서비스(자신이 수행하던 업무는 객관성 저해됨) 5. 컨설팅서비스(자신이 수행하던 업무는 제공 가능)
중앙.지자체 자체감사기준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 분리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실시 4. 감사계획수립, 감사대상 선정 등에 외부간섭 배제 5.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감사실시와 결과처리 6.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없이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
Sally-Anne Pitt	1. 기능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 2. 관리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보고서	1.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2. 경영진과 피감사인 및 대상 업무로부터 독립적 3. 이사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명과 해임
내부회계관리 개념체계	이사회는 독립적 운영이란-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평가·감독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객관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을 보유.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	1.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보유 2.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독립성은 형식적 독립성과 실질적 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독립성이란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이 아닌 감사나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소속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독립성이란 회계·재무 등 다른 부서와 겹치지 않고, 순환보직이 아닌 직으로 입사부터 정년까지 감사부서에서만 전속 근무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보고서). 업무수행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나 경영진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부감사 현황은 위와 같은 의미의 독립성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지적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비율이 40%가 넘고(삼정KPMG), 감사부서 전담 인원을 별도로 두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Raiborn et al. 2017).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독립성의 측정은 보고라인을 사용한다. 내부감사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내부감사 중 발견한 지적사항 등을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내부감사가 감사위원회와 직접 의사소통할 것을 IPPF와 자체감사기준, Sally-Anne Pitt , Raiborn et al.(2017)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주주는 경영자의 부정 비리를 감독할 기관으로 감사를 사용한다. 감사와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을 감시하여 발견한 부정 비리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개선이 불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의 내부감시 장치에 관한 보고서에서 감사(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독립성 판단기준으로 사용한다.

둘째, 전문성의 측정이다. IIA의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 1200은 감사 업무는 숙달과 상당한 전문가적 주의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전문성

에 대해 명시하였다. 내부감사인들은 적절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들의 전문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 표 8 > 전문성 측정치

규정	전문성
IIA	1. 전문자격증의 취득(CPA, CIA, CISA) 2. 부정위험과 부정을 판단할 충분한 지식 3. 기술기반 감사테크닉 함양 4. 합리적인 신중함과 감사능력 요구됨. 5. 상당한 전문가적 주의 요구됨. 6.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
중앙.지자체 자체감사기준	1.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2. 감사 및 회계교육의 이수 3. 외부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참여
Sally-Anne Pitt	1. 내부감사팀은 전체적·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보유 2. 전문적 숙달 (CPA, CIA, CISA) 필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보고서	1. 전문자격증 보유 2. 감사관련업무에 경력 필요 3. 내부감사부서는 순환근무 아닌 전문적인 직업군일 것 4. 감사인의 교육 및 훈련시간 5.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내부회계관리 개념체계	이사회에 전문성이란-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 유지 및 주기적 평가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 전문적 자격 요구됨.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강화될수록 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므로 경영진이 회계이익을 왜곡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陶玉俠 2016). 내부감사책임자는 자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내부감사인을 흡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내부감사인이 유능한지가 내부감사가 유능한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내부감사인의 우수

한 전문성은 내부 감사 부서의 자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Al-Twaijry et al. 2003).

IPPF와 Sally-Anne Pitt는 직원들이 내부감사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정당한 주의 및 전문가적 숙달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것은 직무수행을 통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전문가적 숙달은 CPA나 CIA 등의 자격 획득으로 증명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부감사인의 업무경력도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의 보고서는 외국기업의 경우 내부감사 담당임원(CAE)은 평균 24년의 경력 중 14.8년(외부 및 내부감사 경력)의 감사유관 경력이 있으나 국내 조사 대상 기업의 경우 총 경력 27년 중 감사유관 경력이 3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감사 임원들이 감사에 관한 전문적인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성은 CPA(공인회계사)나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이 있는지와 감사인의 경력으로 측정한다. CPA(공인회계사)나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이 있으면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보고서 상 내부회계관리 운영보고서에서 CPA자격증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내부감사인의 경력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1과 0으로 하여 경력값을 부여하였다.

셋째, 규모의 측정이다. 중앙 및 지자체 자체감사기준 제11조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예산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계획은 협의·조정 사항,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 위탁 및 대행사항, 감사빈도 및 주기,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 등을 고려한다.

< 표 9 > 규모 측정치

규정	규모
IIA	1. 내부감사인인 감사목표, 감사범위, 감사시점, 자원배분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 2. 인원배정은 감사업무의 복잡성, 시간제약, 가용자원에 기초
중앙·지자체 자체감사기준	1. 감사담당자등(감사기구의 장, 감사담당자), 감사단 2.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3.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등 현황
Sally-Anne Pitt	1. 내부감사기능에 적절한 인원 배치는 매우 중요. 2. 직원 배치시 직원의 역량과 능력, 가용 재무 자원 고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보고서	1. 감사계획수립-감사목표와 업무의 범위 설정 2. 감사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예산, 내부감사인 수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1.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위한 적절한 수의 인원 확보

내부 감사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내부 감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내부 감사 부서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王守海와 楊亞軍 2010). 내부감사인 규모가 크면 회사 거래의 모니터링을 더 잘할 수 있고 경영진의 부정·사기와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다 잘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다(Al-Twaijry et al. 2003). 내부감사인의 인원수가 많을수록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은 감소한다(Lee and Park 2016; 김동영 2019; 서윤석 외 2018).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의 보고서는 IIA의 감사인 인원비교를 보고하였다. 외국기업의 경우 내부감사인 1인당 종업원 수는 992명, 내부감사인 1인당 매출액은 249백만 달러, 내부감사인 1인당 자산총액은 745백만 달러가 평균치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은 매출액과 자산총액에서 감사인원이 선진기업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부감사 규모를 내부감사지원인 수와 내부감사인 급여의 중위수로 측정한다. IPPF와 Sally-Anne Pitt는 감사계획에 감사예산과 감사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감사인원은 내부감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수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직은 감사와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 그리고 내부감사지원인이다. DART의 사업보고서에 감사예산은 공시되고 있지 않으나, 감사와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감사급여는 별도로 공시되어 있어 감사예산의 대용치로 급여의 중위수를 사용한다.

넷째, 범위의 측정이다. IIA의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 2100에 의하면 최고감사책임자는 조직목표와 일관되고 리스크에 기반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표 10 > 범위 측정치

규정	업무범위
IIA	1. 범위는 감사업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정 2. 관련시스템, 기록, 인적자원, 실물자산 포함 3. 감사계획과 자원요구사항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승인 4. 업무중복을 최소화위해 감사영역 배분 5. 부정위험, 중요한 리스크 노출, 통제문제, 지배구조 관련 쟁점들 보고 <감사업무의 성격> 1. 지배구조(전략 의사결정, 윤리, 리스크관리 통제 감독) 2. 리스크관리(위험의 식별, 위험 대응책, 전사적 위험정보 수집과 공유,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 법·규정·정책·절차의 준수) 3. 통제(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

	법·규정·정책·절차의 준수)
중앙.지자체 자체감사기준	1.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 2. 감사원이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 3. 위탁 및 대행사항 4. 감사빈도 및 주기 5.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 6.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 위반 우려 사항
Sally-Anne Pitt	1. 내부감사기능은 조직마다 다르므로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리스크에 따라 결정 2. 감사작업 유형을 어슈어런스와 컨설팅 활동으로 구분 3. 보증(assurance)-재무, 성과, 컴플라이언스(법률,규정,정책 준수), 시스템보안, 정밀실사 4. 컨설팅(consulting)-리스크관리, 사기 통제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보고서	1. 내부통제구조의 정확성과 효과성 및 할당된 임무 수행 2.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3. 정책, 계획, 절차, 재무, 운영, 법규 및 규정 준수 4. 자산의 보호 5. 자원 이용의 경제성, 효율성 평가
내부회계관리	1. 내부통제제도 보고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목적 중 외부 공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2. 자산의 보호 3. 부정방지 프로그램 포함.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재무보고, 내부신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내부감사의 업무범위란 내부감사인인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권한과 책임의 크기를 말한다. 즉, 내부감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과 부서장에 대한 처벌 및 징계 등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최근 내부감사인의 업무범위는 국제내부감사기준(IPPF)이 강화되어 단순한 회계감사를 넘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컨설팅, 부가가치기능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감사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내부감사는 업무감사 및 부정적발까지 하게 되므로 내부감사가 외부감사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본 연구에서 컨설팅 수는 대출(차입), 증자(감자), 합병, 타법인 주식취득, 비감사서비스 등은 기업의 위험 증감 요인이 된다고 보아 이런 사안의 의사결정에 감사가 관여하는 지로 측정하였다. 업무 범위 수는 일상감사와 정기감사는 대부분 기업이 하고 있으므로 특별감사, 수시감사, 시제 감사를 추가로 하는 경우 더미변수로 하였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징계·변상·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음을 사업보고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IPPF, 자체감사기준 등의 기준과 규정에서 제시한 내부감사품질 특성을 크게 네 가지 요약할 수 있다. 네 가지 특성을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표 11 > 내부감사품질 특성 요약

독립성 1.조직의 독립성(이사회보고, 의견교환) 2.개인의 객관성(외양, 사실에 대한 독립성) 3.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 분리 4.감사계획수립, 감사대상 선정에 외부간섭배제 5.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권 6.독립성은 보고라인으로 판단 (기능상 감사위원회, 관리상 최고경영자)	전문성 1.전문자격증 취득(CPA, CIA, CISA) 2.부정위험과 부정을 판단할 충분한 지식 3.기술기반 감사테크닉 함양 4.합리적 신중함과 감사능력 5.상당한 전문가적 주의 6.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 7.외부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참여
규모 1.내부감사인원 감사목표, 감사범위, 감사시점, 자원배분을 포함한 감사계획 수립 2.인원배정은 감사업무의 복잡성, 시간제약, 가용자원에 기초 3.감사담당자, 감사단 등 적절한 인원수 4.관계법령, 지침, 내부규정 5.감사대상기관, 부서의 기능, 조직, 인력, 예산 6.직원 배치시 직원 역량, 능력, 재무자원 고려	범위 1.범위는 감사업무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정 2.관련시스템, 기록, 인적자원, 실물자산 포함 3.업무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감사영역 배분 4.감사빈도 및 주기, 위탁 및 대행사항 5.감사영역을 보증업무와 컨설팅업무 보증(ASSURANCE)-재무,성과,컴플라이언스 컨설팅(CONSULTING)-리스크관리,사기통제 6.재무보고, 내부신고,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본 연구에서 내부감사품질을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로 측정하였다. 독립성은 보고라인으로 하고, 전문성은 자격증과 경력의 합을 2로 나누어 평균을 사용하고, 규모는 인원수와 급여 중위수의 합을 2로 나누어 평균을 사용하고, 범위는 컨설팅수와 업무범위 수의 합을 2로 나누어 평균을 사용하였다. 구해진 네 가지 특성의 모든 값을 더하여 IAQ를 구하였다. 그 값은 0부터 4까지이고, 값이 클수록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다. 이와 같이 측정된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제3장에서 이어진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

외부감사의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업무의 복잡성, 자회사 수, 해외법인의 수, 연결법인 등은 감사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수영 외 2005; 최관과 백원선 1998).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¹⁵⁾에서 연결 여부, 종속자회사 수, 위험계정 비중, 지주사, 핵심감사제, 당기순손실, 비적정 의견 및 초도감사를 감사시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K-IFRS도입이나 외감법의 개정(2018년 11월)으로 감사인의 업무량은 질적·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정영기 201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보고되는 오류를 통제받을 수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감사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검토해야 할 감사범위가 방대해지고, 동시에 늘어난 업무량에 감사시간은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할수록 통제위험이 높게 평가되고 외부감사위험도 커진다(최승호 2009; 양일수와 이재은 2016).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때 외부감사의 감사시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외부감사가 검토

15)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2019년 08월 19일 최종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

할 업무를 기업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내부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내부감사가 재무제표를 충실히 검토한 후 외부감사가 감사한다면 외부감사의 노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는 내부감사 시스템이 갖추어진 기업에서 이의 효율적 활용이 외부감사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우선 관심을 갖는다.

선행연구에서는 내부감사인의 수가 많을수록, 담당자의 경력기간이 길수록, 전문성이 많을수록 외부감사인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and Park 2016; 김동영 2019; 서윤석 외 2018). 반면, 감사환경의 변화로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감사시간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노준화와 배길수 2008; 정영기 2012; 이명곤 외 2008).

내부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은 내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인의 수가 많고 종사경력이 길며, 전문적인 능력이 풍부하고 책임과 권한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감사 기관의 내부감사품질이 높을 경우, 감사인은 피감사 기관 감사 시 내부감사품질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감사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내부감사품질 측정치에 따라 감사시간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시간과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산업전문성을 가진 감사인과 대형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는 감사보수가 크다. 그 이유는 산업전문성을 가진 감사인과 대형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우수한 감사품질을 보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DeAngelo 1981; 나종길

과 최기호 2006; 정재연 2012). 그러나 이것은 외부감사인의 특성이고, 내부감사인의 특성은 외부감사보수를 낮출 수 있는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할 때 기업은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부실감사로 인해 기업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고, 감사인은 명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이명곤 외 2008; 이경태 외 2007; 신용준과 김은 2010).

이때 감사인은 감사위험과 소송위험 및 명성손상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감사보수에 반영한다. 즉,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보수 책정 시 기업실패위험에 대한 할증보수를 청구하기 때문에 감사보수를 높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정태섭 2013; 박재환과 김승준 2015).

반면에,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을 줄여준다면 외부감사보수는 낮아질 것이다(Wallace 1989; Prawitt et al. 2011). 우수한 내부감사에 대한 의존이 외부감사시간을 줄여주고, 외부감사 범위를 좁혀 주고, 외부감사의 작업량을 줄여, 감사효율성은 올리고 감사보수는 낮춘다(Abbott et al. 2012; Felix et al. 2001; Zain et al. 2005). 내부감사의 노력으로 취약점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여줄 수 있다(박재환과 김승준 2015; 신용준과 김은 2010).

내부감사품질이 높을 경우 감사위험과 소송위험 요소를 내부감사가 선제적으로 발견할 것이다. 감사보수가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이명곤 외 2008)임을 고려할 경우 높은 내부감사품질은 감사보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외부감사시간은 내부감사품질 측정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보수와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감사결과 감사인에게 위험이 전가되지 않을 때 그 감사품질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인에게 모든 감사업무가 종료된 후 감사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주를 비롯한 외부 회계정보이용자들이 공시된 회계와 재무정보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감사품질이 양호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기업에서 감사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감사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구사되는 것을 알 수 있다(마희영 외 2012). 또한 외부감사인이 초과 감사보수를 받게 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오히려 감사품질이 훼손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정재욱 외 2009).

같은 맥락으로 감사의견 구매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면 감사품질이 하락하고, 시장점유율이 큰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면 의존도가 높아져 감사품질이 저해될 수 있다(최종학과 정희선 2015; 이우재와 정석우 2016). 요컨대, 내부감사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내부감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감사품질은 위협받게 된다(Gramling and Vandeveld 2006).

그러나 반대로 감사인이 감사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품질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므로 감사인은 계속계약과 평판 관리를 위해서 감사품을 우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하석태와 조성표 2018). 감사파트너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은 감사품질 저하현상이 나타날 때 이를 완화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권수영 외 2018). 요컨대, 감사투입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사품질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류승우 외 2015; 정석우와 정광화 2015).

한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Goodwin and Kent 2006; 전병욱 2018). 대기업과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자회사가 많고 복잡성이 높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감사가 요구되므로 내부감사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 비용이 많아지고, 외부감사수수료도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외부감사품질은 높아진다(Yasin and Nelson 2012; 배길수와 최승욱 2019).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간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인의 기여에 의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감소하기도 한다.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보고서가 재무제표 감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내부감사품질이 높을 때 내부감사인에게 의존한다(Gramling and Vandervelde 2006).

내부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은 내부감사 담당 인원수가 많고, 공인회계사수가 많으며, 업무와 권한범위가 넓은 것을 말한다. 이는 내부감사에 사용할 자원이 많다는 것이고, 내부감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고, 최고경영진의 지원이 크다는 것이다.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한 내부감사인에게 의존¹⁶⁾하는 것이 감사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류예린 외 2018; 박

16) 회계감사기준 610.A4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 기업의 내부감사기능과 외부감사인의 목적이 다른 반면, 내부감사기능은 재무제표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와 비슷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함.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의 책임, 조직 내 위상 및 수행했거나 수행할 활동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고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들에게 질문하도록 요구한다.
- 법류에서 일부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평가 후 외부감사인은 직접 입수할 감사증거의 부분적인 대용으로 감사대상 기간 중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활용을 결정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법규에서 일부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진우 2011; 손성규 2004).

외부감사인인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한다는 명성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인 내부감사인 담당인력 수가 많고, 전문성이 있고,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큰 내부감사인을 신뢰하고 의존하게 된다.

즉,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면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을 받아 더 높은 감사품질을 피감사 대상기업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분식 회계 우려가 있거나 초과감사보수를 받게 되면 감사품질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품질은 내부감사품질측정치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상되므로 아래와 같이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품질과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잘 작성됐는지 검토하고 조사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최종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으며, 이는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재무제표에 오류나 부정이 개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이명곤 외 2019). 이 오류와 부정은 때로는 엄청난 회계부정을 초래하게 되고, 기업과 종업원은 물론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

외부감사가 오류나 부정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간과하였을 때 감사실패 위험이 대두된다. 외부감사는 이런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재무제표에 오류나 부정이 있는지를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험의 종류는 부실감사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 감사실패로 인한 소송,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성 상실에 의한

및 검토하에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다.

상장폐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부감사인인 감사위험을 피하기 위해 감사 보수에 위험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수임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대기업을 피감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기도 한다(김수인 2016; 정태섭 2013).

또한 감사인은 감사노력인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하여 오류발견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감사투입시간이 많을수록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감사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오류 발견 가능성은 높고 재무정보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면 기업실패위험과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지므로 내부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박성환 외 2011; 김현진 2014). 따라서 기업은 내부감사의 인원을 충분히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오류와 부정을 더 잘 발견하고, 위험 예측 수준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감사품질은 높이고, 감사위험은 낮출 것이다. 즉, 내부감사가 활성화되고 우수하게 작동한다면 내부감사의 기여가 외부감사인의 위험요소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부통제가 취약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상장폐지위험이 있는 기업은 고유위험이나 통제위험이 높아 감사인은 감사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위험과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및 변수측정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인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시간, 보수, 품질, 위험 등 외부감사의 특성변수와의 관련성을 검증할 모형을 제시한다.

내부감사품질은 내부감사품질 측정에 관한 국내연구가 없어 국제내부감사기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내부감사품질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외국의 선행연구가 검증했던 변수들을 참조하여 측정하였다.

내부감사품질 첫째, 독립성이란 조직적으로는 감사지적사항을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대상부서와 분리됨을 말한다. 감사계획수립 등에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부감사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위원회가 보유할 때 독립성은 향상된다(Abbott et al. 2012; Roussy and Brivot 2006).

본 연구에서 독립성은 보고라인으로 정의하였다. 내부감사인인 감사지적사항을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부감사는 조직상으로는 경영조직에 속하나, 업무상으로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만 기업 내 부정·비리를 척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성이란 부정위험과 부정을 판단할 충분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합리적 신중함과 상당한 전문가적 주의를 가지고 내부감사를 수행할 능력을 말한다. 전문성은 지속적인 교육과 직무능력 개발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Zain et al. 2015; Mazza and Azzali(2015).

본 연구에서 전문성은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내부감사사 자격증의 보유여부와 내부감사인의 경력 중위수로 정의하였다. 전문자격증 보유가 전문가임을 인증하는 것이고, 또한 전문가의 경력이 중위수 이상이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부감사인이 전문적 능력이 있으면 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아 부정·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규모는 내부감사 가용자원인데, 가용자원이란 내부감사인 수와 내부감사 예산이다. 내부감사인 수와 예산이 많을수록 업무분담 효율이 높고 적시검토가 가능하여 내부감사의 효과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Al-Twajry et. al. 2003; 서운석 외 2018).

본 연구에서 규모는 내부감사인 수와 내부감사인 급여 중위수로 정의하였다. 내부감사인 수는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예산은 공시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내부감사인 급여 중위수를 예산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도 규모를 내부감사인 수만 할 때와 내부감사인 수와 급여 중위수로 할 때의 결과가 유사하였다.

넷째, 범위는 내부감사인의 책임범위와 권한범위이다. 최근 내부감사인의 업무는 회계감사에 머물지 않고 내부통제, 위험관리, 컨설팅, 부가가치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다(陶玉俠 2016; 박정섭 2019). 내부감사의 범위는 외부감사와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배분하여야 하며, 범위가 넓을수록 외부감사의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범위는 보증업무와 컨설팅업무까지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범위는 일상,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감사, 특별감사, 시재감사 등을 하는 경우와 대출(차입), 증자(감자), 합병, 타법인 주식취득, 비감사서비스에 관한 의사결정에 감사가 관여하는 경우 더미변수 1로 정의하였다. 정기감사 외에 수시감사, 특별감사, 시재감사를 더 하게 될 경우 범위는 넓어지고 권한과 책임 또한 넓어진다. 컨설팅업무를 할 경우 범위는 넓어진다.

종속변수인 감사시간(TIME)은 t년도의 외부감사시간으로 정의하였고(정남철 2018; 외감법 제10조), 감사보수(FEE)는 t년도의 외부감사보수(이세용과 송혁준 2005; 페이지 69쪽 주식(외감법 제10조))로 변수정의 하였다. 감사품질(DA)은 수정 Jones모형의 재량적발생액으로 정의하였고(Dechow et al. 1995; 정재욱 외 2009), 감사위험(RISK)은 감리지적, 재무제표 수정, 상

장폐지 실질심사로 변수정의 하였다(마희영 외 2012; 김지령과 권선국 2013; 한만조 2018).

3.2.1 감사시간 모형

$$\begin{aligned} \text{TIME} = & \alpha + \beta_1 \text{IAQ} + \beta_2 \text{SIZE} + \beta_3 \text{IRISK} + \beta_4 \text{SBSUB} \\ & + \beta_5 \text{LEV} + \beta_6 \text{ROA} + \beta_7 \text{BIG4} + \beta_8 \text{AUDCH} \\ & + \beta_9 \text{AGE} + \beta_{10} \text{OPIN} + \beta_{11} \text{MANSR} + \beta_{12} \text{DUAL} \\ & + \Sigma YD + \Sigma IN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1)}$$

<변수설명>

TIME : t년도의 외부감사시간 자연로그 값

IAQ : 내부감사품질 : (①, ②, ③, ④의 합계로 측정)

(값은 0~4. 클수록 내부감사품질이 크다.)

① 독립성 : 감사,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하면 1, 아니면 0

② 전문성 : CPA, CIA자격증이 있으면 1, 아니면 0.

지원인의 업무경력이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③ 규 모 : 내부감사지원인의 수가 있으면 1, 아니면 0

감사와 감사위원회 급여가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④ 범 위 : 업무범위 수, 컨설팅활동내역 수

ㄱ. 업무범위 수(일상,정기 외 수시,특별,시제감사) 있으면 1, 아니면 0

ㄴ. 컨설팅활동내역 수가 있으면 1, 아니면 0

컨설팅업무 수 (투자, 타법인 주식취득, 비감사서비스).

위험관리 (대출(차입), 증자(감자), 합병, 청산)

기업지배구조 (외부감사인선임).

여기서 IAQ를 더 명확하게 실증하기 위해 4개의 측정항목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나누어 식(2)를 제시한다. IAQ는 4가지 측정값의 합으로 구하였으므로 서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AQ측정치의 각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영향이 어떠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begin{aligned} \text{TIME} = & \alpha + \beta_1 \text{STATUS} + \beta_2 \text{EXP} + \beta_3 \text{IA} + \beta_4 \text{SCOPE} \\ & + \beta_5 \text{SIZE} + \beta_6 \text{IRISK} + \beta_7 \text{SBSUB} + \beta_8 \text{LEV} \\ & + \beta_9 \text{ROA} + \beta_{10} \text{BIG4} + \beta_{11} \text{AUDCH} + \beta_{12} \text{AGE} \\ & + \beta_{13} \text{OPIN} + \beta_{14} \text{MANSR} + \beta_{15} \text{DUAL} \\ & + \Sigma YD + \Sigma N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2})$$

<변수설명>

STATUS	:	독립성	: 감사,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 여부
EXP	:	전문성	: CPA, CIA자격증. 지원인의 업무경력 중위수 이상
IA	:	규모	: 내부감사지원인의 수, 감사인급여 중위수
SCOPE	:	범위	: 업무범위 수, 컨설팅활동내역 수

<통제변수>

SIZE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IRISK	:	채고자산과 매출채권/총자산
SBSUB	:	지배 자회사 수 (중속자회사 수의 루트값)
LEV	: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ROA	:	총자산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AGE	:	회사 개업 이후 기간의 자연로그 값
BIG4	:	삼정, 삼일, 안진, 한영,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AUDCH	:	초도감사면 1, 아니면 0
OPIN	:	적정 의견이면 1, 아니면 0
MANSR	:	임원 지분비율
DUAL	: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 아니면 1, 동일인 이면 0

식(1)은 가설1의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가설1의 종속변수는 TIME이다. 외부감사시간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감사계약에 의해 결정하므로 DART

에서 구한 t 년도¹⁷⁾의 감사시간을 자연로그 하였다. 독립변수인 내부감사품질 IAQ는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의 합으로 측정하여 그 값은 0에서 4이며, 값이 클수록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분석 시 IAQ의 계수값 β_1 이 음(-)이면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외부감사시간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독립성은 보고라인이 감사, 감사위원회, 이사회일 때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전문성은 CPA와 CIA 자격증이 있는지와 경력 중위수 이상일 때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규모는 내부감사인 수와 내부감사인 급여의 중위수로 하였다. 김확열과 김효주(2019b)는 규모를 내부감사인 수로만 측정하였는데, 규정¹⁸⁾들에서 내부감사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에 감사인원수와 감사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예산의 대용치로 내부감사부서(감사, 감사위원회)의 급여를 사용하였다. 사업보고서와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도 내부감사인의 연간예산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감사 등의 급여를 사용하였다.

범위는 업무범위 수와 컨설팅 업무 수로 측정하였다. 업무범위는 일상감사와 정기감사 외에 수시감사, 특별감사, 시제감사를 하는 지로 하였다. 컨

17) 외감법 제10조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1. ①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②외부감사 계속 감사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기말감사는 $t+1$ 년에 실시되지만, 위 ①과 ②의 기간 내에 ‘외감법 제4조와령 제5조’(11페이지 각주 참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및 감사인원(직급포함)이 정해지므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은 t 년도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험은 $t+1$ 년에 감사한 건에 대해 감리지적이거나 소송 등이 $t+n$ 년도에 발생하므로 최소 $t+1$ 년의 감사위험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2018년 11월 외감법 제16조의2 제1항을 근거로 2019년 2월 한국공인회계사가 표준감사시간 제정. 감사보수=감사시간*시간당 단가. 로 산출됨.
- 18) IPPF; 자체감사기준; 내부감사품질관리; 금감원보고서; Abbott et al. 201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2019년 08월 19일 최종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

설터업무 수는 투자, 타법인 주식취득, 비감사서비스 등을 컨설팅 수로, 대출(차입), 증자(감자), 합병, 청산 등을 위험관리로, 외부감사인 선임을 기업 지배구조로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감사시간결정요인을 자산규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중, 영업장 수, 감사인 유형, 상장여부, 비감사서비스, 부채비율이라 하였다 (권수영 외 2005; 최관과 백원선 1998).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은 연결 여부, 자회사 수, 위험계정 비중, 지주사, 핵심감사제, 당기순손실, 비적정 의견, 초도감사를 제시하였다. 이것들을 참조하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다.

회귀식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표 12 > 통제변수 요약

변수명	내용	참조
SIZE	기업규모. 감사시간, 감사보수 결정 요소	최관과 백원선(1998)
IRISK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 분식을 통한 과대계상 가능성, 감사의 복잡성 우려	전홍민(2013)
SBSUB	종속자회사 수. 연결법인인 경우 감사 복잡성 우려	李嘉明(2016)
LEV	부채비율. 파산위험, 감사위험으로 인식	정현욱(2013)
ROA	수익성, 재무건전성이 크면 감사위험 감소	이세용과 송혁준(2005)
AGE	기업연령. 클수록 기업안정화, 감사시간, 감사보수도 안정적	陶玉俠(2016)
BIG4	고품질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권수영 외(2005)
AUDCH	초도감사시 더 많은 감사노력 기대	최종학과 정희선(2015)
OPIN	적정 감사의견은 감사위험 감소	정남철(2018)
MANSR	임원지분비율. 주주와 경영자 이해 일치로, 왜곡의도 감소	전홍민(2013)
DUAL	소유와 경영 분리, 횡령·부정 발생 감소	Chapple et al.(2007)
IND, YD	산업터미, 연도터미	정현욱(2013)

3.2.2 감사보수 모형

$$\begin{aligned}
 FEE = & \alpha + \beta_1 IAQ + \beta_2 SIZE + \beta_3 IRISK + \beta_4 SBSUB \\
 & + \beta_5 LEV + \beta_6 ROA + \beta_7 BIG4 + \beta_8 AUDCH \\
 & + \beta_9 AGE + \beta_{10} OPIN + \beta_{11} MANSR + \beta_{12} DUAL \\
 & + \Sigma YD + \Sigma IND + \varepsilon
 \end{aligned}
 \tag{식(3)}$$

<변수설명>

FEE : t년도의 외부감사보수 자연로그 값

$$\begin{aligned}
 FEE = & \alpha + \beta_1 STATUS + \beta_2 EXP + \beta_3 IA + \beta_4 SCOPE \\
 & + \beta_5 SIZE + \beta_6 IRISK + \beta_7 SBSUB + \beta_8 LEV \\
 & + \beta_9 ROA + \beta_{10} BIG4 + \beta_{11} AUDCH + \beta_{12} AGE \\
 & + \beta_{13} OPIN + \beta_{14} MANSR + \beta_{15} DUAL + \Sigma YD \\
 & + \Sigma IND + \varepsilon
 \end{aligned}
 \tag{식(4)}$$

감사보수모형은 감사시간모형과 같고 종속변수 FEE 만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을 취하였다. 여기서도 식(3)에서 IAQ와 식(4)에서 각 독립변수 STATUS, EXP, IA, SCOPE를 분석하였다.

3.2.3 감사품질 모형

$$\begin{aligned}
 DA = & \alpha + \beta_1 IAQ + \beta_2 SIZE + \beta_3 IRISK + \beta_4 SBSUB \\
 & + \beta_5 LEV + \beta_6 ROA + \beta_7 BIG4 + \beta_8 AUDCH \\
 & + \beta_9 AGE + \beta_{10} OPIN + \beta_{11} MANSR + \beta_{12} DUAL
 \end{aligned}$$

$$+ \Sigma YD + \Sigma IND + \varepsilon \quad \text{식(5)}$$

<변수설명>

DA : 수정 Jones 모형의 재량적 발생액

$$\frac{TA}{A_{t-1}} = a_1 \left(\frac{1}{A_{t-1}} \right) + a_2 \left(\frac{\Delta REV - \Delta AR}{A_{t-1}} \right) + a_3 \left(\frac{PPE}{A_{t-1}} \right) + \epsilon \quad \text{식(6)}$$

$$DA = \frac{TA}{A_{t-1}} - \left\{ a_1 \left(\frac{1}{A_{t-1}} \right) + a_2 \left(\frac{\Delta REV - \Delta AR}{A_{t-1}} \right) + a_3 \left(\frac{PPE}{A_{t-1}} \right) \right\} \quad \text{식(7)}$$

TA :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

ΔREV : 매출액의 변동

ΔAR : 매출채권의 변동

PPE : 상각대상 설비자산

A_{t-1} : 총자산

ϵ_t : 잔차항

DA : 재량적 발생액

$$\begin{aligned} DA = & \alpha + \beta_1 \text{ STATUS} + \beta_2 \text{ EXP} + \beta_3 \text{ IA} + \beta_4 \text{ SCOPE} \\ & + \beta_5 \text{ SIZE} + \beta_6 \text{ IRISK} + \beta_7 \text{ SBSUB} + \beta_8 \text{ LEV} \\ & + \beta_9 \text{ ROA} + \beta_{10} \text{ BIG4} + \beta_{11} \text{ AUDCH} + \beta_{12} \text{ AGE} \\ & + \beta_{13} \text{ OPIN} + \beta_{14} \text{ MANSR} + \beta_{15} \text{ DUAL} + \Sigma YD \\ & + \Sigma IN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8)}$$

감사품질모형은 감사보수모형과 같고 종속변수 DA만 수정 Jones 모형 (Dechow et al. 1995)으로 계산한 재량적 발생액¹⁹⁾을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식(5)에서 IAQ와 식(8)에서 각 독립변수 STATUS, EXP, IA 및

19)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할 때 결과의 방향성과 크기를 볼 때는 DA를 사용하고, 방향성보다 크기를 보고자 할 때 DA절대값을 사용한다. 재량적발생액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연구에서 감사품질의 예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값을 사용하기도 한다(양일수와 이재은 2016).

SCOPE를 분석하였다.

3.2.4 감사위험 모형

$$\begin{aligned} \text{RISK} = & \alpha + \beta_1 \text{IAQ} + \beta_2 \text{SIZE} + \beta_3 \text{IRISK} + \beta_4 \text{SBSUB} \\ & + \beta_5 \text{LEV} + \beta_6 \text{ROA} + \beta_7 \text{BIG4} + \beta_8 \text{AUDCH} \\ & + \beta_9 \text{AGE} + \beta_{10} \text{OPIN} + \beta_{11} \text{MANSR} + \beta_{12} \text{DUAL} \\ & + \Sigma YD + \Sigma IN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9)}$$

<변수설명>

RISK : t+1년도²⁰⁾에 ①감리지적, ②재무제표수정 ③상장폐지실질심사가
있으면 1, 아니면 0. (①, ②, ③ 을 합한 값)

$$\begin{aligned} \text{RISK} = & \alpha + \beta_1 \text{STATUS} + \beta_2 \text{EXP} + \beta_3 \text{IA} + \beta_4 \text{SCOPE} \\ & + \beta_5 \text{SIZE} + \beta_6 \text{IRISK} + \beta_7 \text{SBSUB} + \beta_8 \text{LEV} \\ & + \beta_9 \text{ROA} + \beta_{10} \text{BIG4} + \beta_{11} \text{AUDCH} + \beta_{12} \text{AGE} \\ & + \beta_{13} \text{OPIN} + \beta_{14} \text{MANSR} + \beta_{15} \text{DUAL} + \Sigma YD \\ & + \Sigma IN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10)}$$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감사위험의 대응치를 재량적발생액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재량적발생액은 측정오차문제로 실무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마희영 외 2012b). 또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므로 새로운 감사품질의 대응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현진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감리지적, 재무제표수정,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감사위험의 대응치로 사용한다. 이런 대응치들은 감사위험과

20) t년도와 t+1년도의 구분 : 67 페이지 각주 참조

감사실패로 위험프리미엄을 발생시킬만한 것이므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는 것보다 실무적 의의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3.3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① 금융감독원 데이터베이스 DART에서 감사보고서에 감사보수, 감사 시간 등 입수가능한 기업
- ②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③ 12월 결산법인
- ④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에서 재무자료 입수가능한 기업
- ⑤ 기업공시채널 KIND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 자료 입수

이 외에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과 자본잠식된 기업은 제거하였다. < 표 13 >은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최종 4,819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 표 13 > 표본선정 결과

표본 선정	표본 수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 월 결산법인	7,059
금융업 제외	1,229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제외	578
감사보수자료가 없는 기업 제외	406
자본잠식기업 제외	27
최종 검증에 이용한 표본 수	4,819

본 연구에서 감사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사업보고서 작성한 2010년부터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t 년의 값을 이용하고 감사위험은 $t+1$ 년의 값을 이용하므로 2017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자료까지 이용하였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금융감독원 DART에서 수작업(handy collection)으로 추출하였고, 내부감사와 관련된 보고라인, 지원인수, 업무범위, CPA자격증, 재무제표수정 자료도 DART의 사업보고서에서 입수하였다. 감리지적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수집하였다.

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이유는 제조업이나 상품매매업과 회계처리 절차나 자본구조 등이 상이하고, 금융감독원의 규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부채가 자산의 100%를 넘는 기업(=부채가 자본의 200%가 넘는 기업)은 자본잠식기업으로 간주하고 편의(bias)가 발생하여 내적타당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극단치로 인한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의 상·하위 1% 기준에서 winsorization 후에 분석하였다.

산업의 분포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의 중분류를 이용하였다. 최종표본은 4,819개의 산업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14 > 표본의 산업별 분포

산업	업체 수	비율
1. 건설업	177	3.67
2. 교육서비스	8	0.17
3. 교통, 운송업	156	3.24
4. 농업,어업,임업,광업	39	0.81
5. 도매업,소매업	439	9.11
6. 예술,스포츠,레저	24	0.50
7. 음식,숙박업	14	0.29
8. 전기,수도,가스	64	1.33
9.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22	6.68
10. 제조업	3302	68.52
11. 출판,미디어,방송,정보서비스	237	4.92
12. 부동산,임대업	37	0.77
Total	4,819	100

총 12개 산업군으로 분류한 바, 제조업이 68.52%를 차지하고, 도매업과 소매업이 9.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가 6.68%를 차지하는 등 선행연구와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분석 시 산업효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산업더미를 포함하고, 특정 연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통제하였다.

IV.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4.1.1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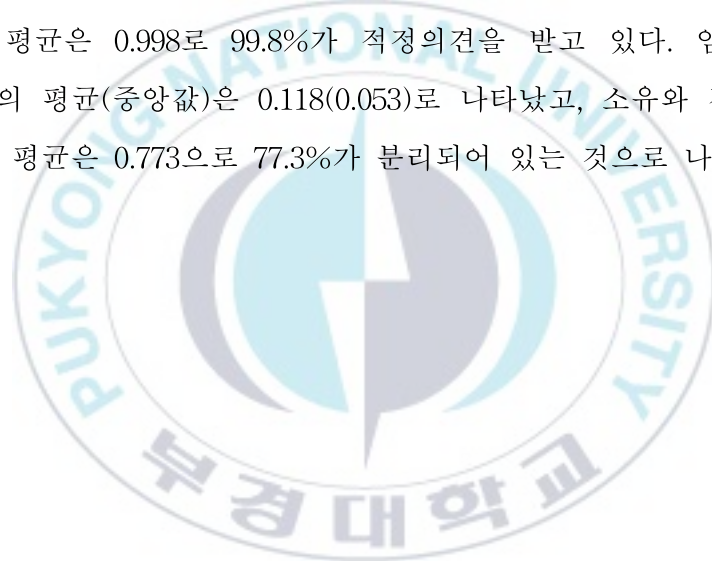
< 표 15 >는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4가지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및 감사위험이다. 감사시간(TIME)의 평균은 7.336이고 중앙값은 7.184이다. 감사보수(FEE)는 평균이 18.537이고 표준편차는 0.826이고 중앙값은 18.369이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평균과 중앙값이 큰 차이가 없다. 감사품질(DA)의 평균은 -0.241이다. 감사위험(RISK)는 평균이 0.257이지만 중앙값은 0이다. 표본의 절반이상이 감사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심변수는 IAQ와 STATUS, EXP, IA, SCOPE이다. 내부감사품질(IAQ)는 평균(중앙값)이 1.508(1.500)이다.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를 합한 값이므로 0부터 4까지 나올 수 있는데, 표본의 내부감사품질 평균이 1.5이다. 독립성(STATUS)의 평균(중앙값)은 0.294(0.000)로 전체 표본의 29.4%만 감사와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의미이다.

전문성(EXP)의 평균(중앙값)은 0.367(0.500)로 36.7%가 공인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규모(IA)의 평균(중앙값)은 0.264(0.500)로 내부감사인원수가 있는 기업과 급여 중위수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26.4%라는 의미이다. 범위(SCOPE)의 평균(중앙값)은 0.588(0.500)로 내부감사의 업무 범위는 58.8%가 일상·정기감사 외에도 특별·수시·시재감사를 하고 컨설팅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의미이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기업규모(SIZE)의 평균과 중앙값은 26.800(26.536),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율(IRISK)의 평균(중앙값)은 0.259(0.250), 종속자회사수(SBSUB)의 평균(중앙값)은 1.961(1.732)이고, 부채비율(LEV)은 평균 42.85%이다. 총자산이익률(ROA)의 평균(중앙값)은 0.024(0.029), 기업 개업이후 기간(AGE)의 평균(중앙값)은 3.770(3.932), 대형회계법인 여부(BIG4)의 평균은 0.672로 67.2%가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인 교체(AUDCH)의 평균(중앙값)은 0.124(0.000), 감사의견(OPIN)의 평균은 0.998로 99.8%가 적정의견을 받고 있다. 임원지분비율(MANSR)의 평균(중앙값)은 0.118(0.053)로 나타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DUAL)의 평균은 0.773으로 77.3%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 >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중앙값	최댓값
TIME	7.336	0.814	5.817	7.184	9.957
FEE	18.547	0.826	16.951	18.369	21.122
DA	-0.241	0.263	-1.088	-0.217	0.618
RISK	0.257	0.449	0.000	0.000	3.000
IAQ	1.508	0.723	0.000	1.500	3.000
STATUS	0.294	0.456	0.000	0.000	1.000
EXP	0.367	0.328	0.000	0.500	1.000
IA	0.264	0.276	0.000	0.500	1.000
SCOPE	0.588	0.357	0.000	0.500	1.000
SIZE	26.800	1.489	23.928	26.536	31.054
IRISK	0.259	0.145	0.004	0.250	0.629
SBSUB	1.961	2.060	0.000	1.732	17.578
LEV	0.428	0.198	0.056	0.426	0.896
ROA	0.024	0.079	-0.352	0.029	0.225
AGE	3.770	0.509	2.079	3.932	4.533
BIG4	0.672	0.469	0.000	1.000	1.000
AUDCH	0.124	0.329	0.000	0.000	1.000
OPIN	0.998	0.041	0.000	1.000	1.000
MANSR	0.118	0.142	0.000	0.053	0.530
DUAL	0.773	0.419	0.000	1.000	1.000

1)변수의 정의

TIME	t년도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FEE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DA	수정 Jones모형의 재량적 발생액
RISK	t+1년도 ①감리지적, ②채무제표수정, ③상장폐지실질심사가 있으면1, 아니면 0 (①,②,③의 합계)
IAQ	내부감사품질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의 합)
STATUS	: 독립성 : 감사,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 여부
EXP	: 전문성 : CPA, CIA자격증. 지원인의 업무경력 중위수 이상
IA	: 규 모 : 내부감사지원인의 수, 감사인 급여 중위수
SCOPE	: 범 위 : 업무범위 수. 컨설팅활동내역 수
SIZE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IRISK	채고자산과 매출채권/총자산
SBSUB	지배 자회사 수 (중속자회사 수의 루트값)
LEV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ROA	총자산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AGE	회사 개업 이후 기간의 자연로그 값
BIG4	삼정, 삼일, 안진, 한영,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AUDCH	초도감사면 1, 아니면 0
OPIN	적정 의견이면 1, 아니면 0
MANSR	임원 지분비율
DUAL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 아니면 1, 동일인 이면 0

4.1.2 상관관계분석

< 표 16 >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다른 변수의 영향없이 단순 상관관계를 보면, TIME과 IAQ는 양(+)의 유의한 상관이다($t=0.106$, $p<.00$).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감사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석된다. FEE와 IAQ는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낸다(0.102 , $p<.00$).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DA와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인다. 내부감사품질과 재량적발생액은 관련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RISK와 IAQ는 유의한 음(-)의 상관으로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감사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속변수와 내부감사품질의 각 특성인 독립변수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감사시간(TIME)은 STATUS와 SCOPE는 유의한 음(-)의 상관이고, EXP와 IA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이다. 감사시간은 독립성과 범위가 클 때 감소하고, 전문성과 규모가 클 때 증가한다. 즉, 보고라인이 감사와 이사회일 때 독립적인 것으로 감사지적사항을 경영진이 아닌 감사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줄인다는 의미이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의 소통을 담당하는 지위로서 내부감사 최고

책임자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감사인의 업무범위가 넓을수록 감사시간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감사보수(FEE)는 STATUS와 SCOPE는 유의한 음(-)의 상관이고, EXP와 IA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이다. 감사보수는 독립성과 범위가 클 때 감소하고, 전문성과 규모가 클 때 증가한다. 보고라인이 감사와 이사회 일 때와 업무범위가 넓을 때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내부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경력이 오래일 때와 인원수가 많고 예산이 많을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감사품질(DA)은 전문성(EXP)이 양(+)의 유의한 상관, 규모(IA)가 유의한 음(-)의 상관이다. STATUS와 SCOPE는 유의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량적발생액은 클수록 이익조정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감사품질이 우수하다고 해석된다. 내부감사인이 전문능력을 갖추수록 재량적발생액은 커지므로 감사품질은 감소하고, 내부감사인의 인원수와 예산이 클수록 재량적발생액은 작아지므로 감사품질은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넷째, 감사위험(RISK)은 전문성(EXP)만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이고, STATUS, IA, SCOPE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내부감사인이 전문능력을 갖추수록 감사위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 상관분석은 외부감사의 시간, 보수, 품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에 미치는 내부감사품질과 그 특성변수들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다른 변수를 통제한 다변량 분석에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상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값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2.579(SIZE)에서 1.023(OPIN)으로 임계치인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6 >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이후계속)

	FEE	TIME	DA	RISK	IAQ	STAT US	EXP	IA	SCOP E	SIZE	IRISK	SBSU B	LEV	ROA	AGE	BIG4	AUDC H	OPIN	MAN SR	DUA L
FEE	1																			
TIME	0.902 ***	1																		
DA	-0.138 ***	-0.113 ***	1																	
RISK	0.048 ***	0.039 ***	-0.002	1																
IAQ	0.102 ***	0.106 ***	0.000	-0.038 **	1															
STAT US	-0.066 ***	-0.067 ***	0.002	-0.018	0.617 ***	1														
EXP	0.083 ***	0.092 ***	0.043 ***	-0.04 **	0.439 ***	-0.039 **	1													
IA	0.29 ***	0.285 ***	-0.060 ***	-0.023	0.433 ***	0.022	0.081*	1												
SCOP E	-0.008	-0.001	-0.001	0.002	0.539 ***	0.023	0.026*	0.075 ***	1											
SIZE	0.833 ***	0.852 ***	-0.175 ***	0.024	0.156 ***	-0.049 ***	0.098 ***	0.358 ***	0.020	1										
IRISK	-0.244 ***	-0.263 ***	0.116 ***	-0.035 **	-0.032 **	0.003	0.006	-0.124 ***	0.025	-0.298 ***	1									

- 1)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15 >와 동일함.

< 표 16 >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이후계속)

	FEE	TIME	DA	RISK	IAQ	STAT US	EXP	IA	SCOP E	SIZE	IRISK	SBSU B	LEV	ROA	AGE	BIG4	AUDC H	OPIN	MAN SR	DUA L
SBSU B	0.660 ***	0.700 ***	0.029 *	0.074 ***	0.145 ***	-0.044 ***	0.165 ***	0.222 ***	0.032 **	0.648 ***	-0.281 ***	1								
LEV	0.221 ***	0.188 ***	-0.257 ***	0.110 ***	0.009	-0.070 ***	-0.040 **	0.081 ***	0.079 ***	0.184 ***	0.139 ***	0.058 ***	1							
ROA	0.059 ***	0.090 ***	0.187 ***	-0.130 ***	0.056 ***	0.051 ***	0.004	0.089 ***	-0.020	0.171 ***	0.060 ***	0.029 *	-0.339 ***	1						
AGE	0.019	0.022	-0.015	0.008	0.037 **	-0.014	-0.011	0.057 ***	0.055 ***	0.047 ***	-0.070 ***	0.057 ***	0.006	-0.068 ***	1					
BIG4	0.425 ***	0.467 ***	-0.118 ***	-0.015	0.064 ***	-0.050 ***	0.028 *	0.179 ***	0.033 **	0.446 ***	-0.086 ***	0.239 ***	0.075 ***	0.124 ***	-0.044 ***	1				
AUDC H	-0.010	0.009	-0.046 ***	0.060 ***	-0.021	0.007	-0.033 **	-0.019	-0.005	-0.027 *	-0.035 **	-0.018	0.083 ***	-0.073 ***	-0.037 **	-0.018	1			
OPIN	-0.015	-0.001	0.066 **	-0.006	0.045 ***	0.025	0.023	0.014	0.028 *	0.013	0.025	0.001	-0.069 ***	0.155 ***	0.012	0.043 ***	-0.058 ***	1		
MAN SR	-0.0273 ***	-0.265 ***	0.146 ***	-0.069 ***	-0.015	-0.012	0.080 ***	-0.136 ***	0.012	-0.256 ***	0.055 ***	-0.077 ***	-0.201 ***	0.073 ***	0.116 ***	-0.159 ***	-0.040 **	0.023	1	
DUAL	0.211 ***	0.218 ***	-0.125 ***	0.044 ***	0.029 *	0.000	-0.051 ***	0.109 ***	0.025	0.225 ***	-0.125 ***	0.093 ***	0.135 ***	-0.010	-0.115 ***	0.193 ***	0.034 **	-0.006	-0.561 ***	1

1) *****, ***,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15 >와 동일함.

4.1.3 평균차이분석

< 표 17 >은 종속변수 감사시간(TIME)의 평균차이분석 T-test 결과를 나타낸다. 내부감사품질 IAQ의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 독립변수를 0과 1의 이분형 변수로 측정하였으므로 0집단과 1집단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TIME의 경우 독립성, 전문성, 규모 및 범위 모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TATUS는 보고라인이 감사와 이사회인 집단과 대표이사 등 경영진인 집단과 감사시간의 차이가 있다. EXP에서 CPA등의 자격증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은 차이가 있고, 경력이 중위수 이상인 집단과 이하인 집단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IA에서 내부감사인인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이 차이가 있고, 급여가 중위수 이상인 집단과 이하인 집단이 차이가 있다. SCOPE에서 업무범위가 일상, 정기감사만 하는 집단과 일상, 정기, 수시, 특별, 시제 감사를 하는 집단은 차이가 있고, 컨설팅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이 차이가 있다.

< 표 17 > 감사시간의 평균차이분석

	변수	평균	Difference	p-value
TIME	STATUS=1	7.254	0.116	-4.541***
	STATUS=0	7.370		
	EXP(1)=1	7.756	0.555	21.070***
	EXP(1)=0	7.201		
	EXP(2)=1	7.232	0.202	-8.681***
	EXP(2)=0	7.434		
	IA(1)=1	7.989	0.681	11.699***
	IA(1)=0	7.308		
	IA(2)=1	7.563	0.443	19.633***
	IA(2)=0	7.120		
	SCOPE(1)=1	7.372	0.097	3.898***
	SCOPE(1)=0	7.275		
	SCOPE(2)=1	7.295	0.087	-3.704***
	SCOPE(2)=0	7.382		

1) 변수의 정의

TIME	t년도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FEE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DA	수정 Jones모형의 재량적 발생액
RISK	t+1년도 ①감리지적, ②재무제표수정, ③상장폐지실질심사가 있으면1, 아니면 0 (①,②,③의 합계)
STATUS	감사,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 여부
EXP(1)	CPA, CIA자격증이 있으면 1, 아니면 0
EXP(2)	지원인의 업무경력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IA(1)	내부감사지원인의 수가 있으면 1, 아니면 0
IA(2)	감사인 급여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SCOPE(1)	업무범위 수 : 일상, 정기, 특별, 수시, 시재감사면 1, 아니면 0
SCOPE(2)	컨설팅활동내역 수 : 컨설팅업무(투자, 타법인 주식취득, 비감사서비스), 위험관리(대출, 차입, 증자, 감자, 합병, 청산), 기업지배구조(외부감사인선임)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1, 아니면 0

< 표 18 >은 종속변수 감사보수(FEE)에 대한 독립변수의 평균차이분석 결과이다. 감사시간(TIME)과 마찬가지로 모든 측정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의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경우 감사시간에 차이가 있다. 전문성의 경우 회계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있고, 감사인의 경력 중위수 이상과 이하 집단이 차이가 있다.

규모의 경우 지원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있고, 예산 중위수 이상과 이하 집단이 차이가 있다. 범위의 경우 정기와 일상감사만 하는 경우와 정기, 일상, 수시, 특별, 시재 감사를 모두 하는 집단이 차이가 있고, 내부감사인이 컨설팅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집단과 아닌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8 > 감사보수의 평균차이분석

변수	평균	Difference	p-value
FEE	STATUS=1	18.465	-4.451***
	STATUS=0	18.581	
	EXP(1)=1	18.951	20.054***
	EXP(1)=0	18.414	
	EXP(2)=1	18.438	-8.938***
	EXP(2)=0	18.649	
	IA(1)=1	19.233	12.121***
	IA(1)=0	18.517	
	IA(2)=1	18.777	19.632***
	IA(2)=0	18.328	
	SCOPE(1)=1	18.577	3.238***
	SCOPE(1)=0	18.495	
	SCOPE(2)=1	18.505	-3.763***
	SCOPE(2)=0	18.594	

1)변수의 정의는 < 표 17 >과 동일함.

< 표 19 >는 종속변수 감사품질(DA)에 대한 독립변수의 평균차이분석 결과이다. EXP와 IA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성의 경우 회계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있고, 감사인의 경력 중위수 이상과 이하 집단이 차이가 있다. 규모의 경우 지원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있고, 예산 중위수 이상과 이하 집단은 차이가 없다. 독립성과 범위 및 규모 중 예산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19 > 감사품질의 평균차이분석

변수	평균	Difference	p-value
DA	STATUS=1	-0.245	0.756
	STATUS=0	-0.238	
	EXP(1)=1	-0.226	1.918***
	EXP(1)=0	-0.243	
	EXP(2)=1	-0.227	3.321***
	EXP(2)=0	-0.252	
	IA(1)=1	-0.311	-3.893***
	IA(1)=0	-0.237	
	IA(2)=1	-0.244	-0.085
	IA(2)=0	-0.262	
	SCOPE(1)=1	-0.242	-1.149
	SCOPE(1)=0	-0.233	
	SCOPE(2)=1	-0.240	0.159
	SCOPE(2)=0	-0.241	

1)변수의 정의는 < 표 17 >과 동일함.

< 표 20 >은 종속변수 감사위험(RISK)에 대한 독립변수의 평균차이분석 결과이다. STATUS와 EXP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성의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경우 차이가 있다.

전문성의 경우 감사인의 경력 중위수 이상과 이하 집단은 차이가 있다. 회계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없고, 업무범위는 수시, 특별, 시제 감사를 추가로 더하는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및 컨설팅 업무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이 차이가 없다.

< 표 20 > 감사위험의 평균차이분석

변수	평균	Difference	p-value
RISK	STATUS=1	0.230	-2.205**
	STATUS=0	0.270	
	EXP(1)=1	0.270	0.682
	EXP(1)=0	0.260	
	EXP(2)=1	0.230	-4.045***
	EXP(2)=0	0.280	
	IA(1)=1	0.220	-0.267
	IA(1)=0	0.260	
	IA(2)=1	0.250	-1.555
	IA(2)=0	0.270	
	SCOPE(1)=1	0.260	-0.236
	SCOPE(1)=0	0.260	
	SCOPE(2)=1	0.260	0.536
	SCOPE(2)=0	0.250	

1)변수의 정의는 < 표 17 >과 동일함.

4.2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 관련성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의 여러 주제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여 이것이 외부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4.2.1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시간

< 표 21 >은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시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가설1의 검증결과이다. 내부감사품질(IAQ)는 외부감사시간(TIME)과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외부감사시간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 Lee and Park(2013)

등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²¹⁾가 나타났다.

K-IFRS의 도입이 연결범위 변동, 공정가치 평가 확대, 주식 사항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시간이 늘어난다.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업무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투입시간을 가장 많이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면 통제위험이 높아지므로 더 많은 감사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시간 투입이 많을수록 오류발견 가능성이 높고 보고되는 재무정보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에 내부감사를 더 많이 이용하여 외부감사의 작업량을 줄이고 감사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감사품질의 어떤 특성이 외부감사보수 감소에 기여하는지 식(2)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내부감사품질 각각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가설1의 검증에서 독립성(STATUS)과 규모(IA)가 외부감사시간(TIME)과 음(-)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를 내부감사지원인수와 급여 중위수로 정의할 때와 내부감사지원인 수만으로 정의할 때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고라인으로 측정된 독립성이 감사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내부감사 최고책임자가 감사지적사항을 감사와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외부감사시간 감소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사이의 의견교환을 담당하는 지위로서 경영진보다 감사위원회와 소통할 때 외부감사시간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인의 인원수가 많을 때와 내부감사 예산이 많을 때 외부감

21) 제시된 결과는 t+1년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로 분석한 결과이다. t년도로 바꾸어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t년도 분석에서 감사시간은 IAQ, STATUS, IA가 유의한 음(-)의 값, 감사보수는 IAQ, STATUS, SCOPE, IA(t년도에서 추가)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감사품질은 모두 유의하지 않고, 감사위험은 EXP, IA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사시간이 절약되어 감사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부감사인 수가 증가할 때 적절한 업무분담과 적시검토가 이루어져 내부통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기업이 통제위험이 낮아 감사시간은 적게 투입하고 감사효율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인원의 급여가 중위수 이상일 때 감사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은 내부감사인에 대한 예산이 많을 때 내부감사에 대한 지원이 크다는 것으로 경력이 많고 능력이 양호한 내부감사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가질 가능성은 줄어들면서 감사시간은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임원지분율(MANSR)은 감사시간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SIZE), 종속자회사 수(SBSUB), BIG4, 부채비율(LEV), 감사인교체(AUDCH)는 감사시간과 양(+)의 관계이다.

기업규모(SIZE)가 클 때, 종속자회사 수(SBSUB)가 많을 때는 감사업무의 증가와 복잡성으로 인해 감사시간이 많아지고, BIG4로부터 감사를 받으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시간이 늘어난다.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파산위험이 증가하여 감사위험이 높아지므로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감사인교체(AUDCH) 초년도에는 더 많은 감사노력을 할 것이므로 감사시간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오류발견 가능성이 높고 내부회계관리 취약점을 잘 발견하여 외부감사의 감사노력을 줄여주므로 외부감사시간이 줄어든다. 특히 내부감사인이 독립적이면서 내부감사인원수가 많을수록 업무분담과 적시검토 가능하여 내부감사의 효율성이 증가된다.

< 표 21 > 회귀분석 : 가설1의 검증결과

TIME	내부감사품질		개별 분석	
	coef.	t-value	coef.	t-value
(상수)	-1.790	-7.365	-1.790	-8.748
IAQ	-0.032	-4.134***		
STATUS			-0.022	-1.861*
EXP			-0.030	-1.409
IA			-0.052	-3.363***
SCOPE			-0.024	-1.417
SIZE	0.337	57.938***	0.337	56.659***
IRISK	0.053	1.177	0.053	1.187
SBSUB	0.102	28.062***	0.102	27.957***
LEV	0.202	6.141***	0.207	6.248***
ROA	-0.238	-3.010***	-0.238	-3.013***
AGE	-0.011	-0.969	-0.009	-0.857
BIG4	0.232	17.764***	0.233	17.800***
AUDCH	0.046	2.736***	0.046	2.727***
OPIN	-0.194	-1.449	-0.194	-1.444
MANSR	-0.269	-5.641***	-0.265	-5.516***
DUAL	-0.010	-0.636	-0.009	-0.549
YD	포함		포함	
IND	포함		포함	
F-value	513.043***		466.568***	
adj R^2	0.791		0.791	

1)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15>와 동일함.

4.2.2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보수

< 표 22 >는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보수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가설2

의 검증결과이다. 내부감사품질(IAQ)는 외부감사보수(FEE)와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외부감사보수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Wallace(1989), Prawit et al. (2009), Zain et al. (2015), 王守海와 楊亞軍(2010), 李嘉明(2016) 및 陶玉俠 (2016)의 연구에서 실증한 결과와 같다.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 후 더 높아지는 감사보수를 줄이기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신설하거나 보강한다. 내부감사인이 현장방문 횟수를 줄여주고 감사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또 외부감사인이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감사인을 보조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감사보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은 신뢰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내부감사인에게 의존하고 내부감사인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부담의 시간과 범위를 줄여주고, 외부감사인의 작업량 감소로 외부감사보수는 낮아진다.

내부회계관리 취약점이 발견될 때, 부실감사로 인해 소송위험이 증가할 때 내부자거래가 발생할 때 감사보수는 늘어난다. 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부실감사 위험이 있는지, 내부자거래가 있는지를 외부감사인보다 더 면밀히 더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발견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의 위험을 낮추어 감사보수가 감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4)의 검증에서 독립성(STATUS)과 범위(SCOPE)가 외부감사보수(FEE)와 음(-)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독립성과 범위가 감사보수 감소와 관련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독립성(STATUS)이 감사보수와 음(-)의 관계로 나타난 것은 독립성이 클 때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감사지적사항을 감사와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할 때 외부감사보수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횡령·배임 등은 주로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저지르고 회계부정

등도 최고경영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와 같은 발견사항을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체계에 더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범위(SCOPE)가 감사보수와 음(-)의 관계인 것은 범위가 클 때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감사인인 수시감사와 특별감사를 하면 업무범위는 더 넓어지고 권한과 책임범위 또한 넓어진다. 회계장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재고감사부분까지 감사범위가 넓어지면 기말재고액 관련 부정을 막을 능력이 넓어지므로 부정은 줄어들 것이다. 넓어진 범위가 외부감사인의 일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감사보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총자산이익률(ROA)과 감사의견(OPIN), 임원지분율(MANSR)은 감사보수와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총자산이익률(ROA)은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이 높으면 감사위험이 감소하여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신용준과 김은(2010) 연구 결과와 같다.

적정한 감사의견(OPIN)을 받은 기업은 감사위험이 적어 감사보수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임원지분율(MANSR)이 높으면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재무제표 왜곡할 의도가 줄어 감사위험은 적고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전홍민(2013)의 연구 결과와 같다. 기업규모(SIZE)가 클 때, 종속자회사 수(SBSUB)가 많을 때는 감사업무의 증가와 복잡성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많아지고, BIG4로부터 감사를 받으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로 감사보수가 높아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의 업무범위와 시간을 줄여주어 외부감사의 작업량이 줄어들고 외부감사보수가 감소한다. 또 내부감사의 권한과 책임범위가 넓어지면, 내부회계관리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부실감사로 인해 소송위험이 증가할 때, 내부자거래가 발생할 때,

내부감사의 기여가 외부감사 일을 도와 외부감사보수가 감소한다.

< 표 22 > 회귀분석 : 가설2의 검증결과

FEE	내부감사품질		개별 분석	
	coef.	t-value	coef.	t-value
(상수)	9.278	40.391	9.522	40.532
IAQ	-0.031	-3.651***		
STATUS			-0.028	-2.008**
EXP			-0.029	-1.515
IA			-0.011	-0.439
SCOPE			-0.066	-3.750***
SIZE	0.355	54.338***	0.350	52.152***
IRISK	0.065	1.288	0.063	1.314
SBSUB	0.088	21.586***	0.092	22.591***
LEV	0.341	9.232***	0.267	7.359***
ROA	-0.401	-4.511***	-0.463	-5.132***
AGE	-0.020	-1.627	-0.031	-2.447**
BIG4	0.153	10.400***	0.147	9.811***
AUDCH	0.007	0.385	0.009	-0.493
OPIN	-0.506	-3.361***	-0.514	-3.324***
MANSR	-0.294	-5.481***	-0.385	-7.049***
DUAL	-0.014	-0.781	-0.027	-1.462*
YD	포함		포함	
IND	포함		포함	
F-value	418.213***		458.913***	
adj R^2	0.741		0.740	

1)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15>와 동일함.

4.2.3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품질

< 표 23 >은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품질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가설3의 검증결과이다. 분석결과 내부감사품질(IAQ)은 외부감사품질(DA)와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설1과 가설2의 검증결과는 내부감사품질이 높을 때 외부감사시간과 외부감사보수가 낮아진다.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외부감사품질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분식회계 우려가 있거나 내부회계취약점을 보고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내부감사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는 감사품질이 낮아지고, 반대로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감사품질이 증가하였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수준이 높거나 내부심리시간이 늘어나면 감사품질이 증가하였다.

독립성 있는 내부감사부서가 담당 인원수가 많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범위가 넓다면, 외부감사인인 발견할 오류와 부정을 줄여주고 보다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외부감사품질이 우수할 것이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IAQ, STATUS, EXP, IA, SCOPE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품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도 마찬가지이다. 통제변수 중 IRISK, SBSUB, ROA, OPIN, MANSR이 DA와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SIZE, LEV, BIG4가 DA와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가설1과 가설2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검증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을 수정 Jones 모형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부감사품질과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의 상관성이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 Kothari et al. (2005)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으로 감사품질을 사용하여 분석해도 결과는 유의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다.

< 표 23 > 회귀분석 : 가설3의 검증결과

DA	내부감사품질		개별 분석	
	coef.	t-value	coef.	t-value
(상수)	0.485	5.439	0.480	5.327
IAQ	0.003	0.972		
STATUS			-0.001	-0.189
EXP			0.005	0.688
IA			-0.001	-0.076
SCOPE			0.008	1.268
SIZE	-0.032	-12.728***	-0.031	-12.380***
IRISK	0.167	8.819***	0.166	8.767***
SBSUB	0.024	13.961***	0.024	13.816***
LEV	-0.163	-11.429***	-0.164	-11.442***
ROA	0.373	11.096***	0.375	11.127***
AGE	-0.008	-1.607	-0.008	-1.624
BIG4	-0.020	-3.598***	-0.020	-3.636***
AUDCH	-0.010	-1.567	-0.010	-1.552
OPIN	0.145	2.405**	0.144	2.393**
MANSR	0.046	2.287**	0.044	2.173**
DUAL	-0.008	-1.123	-0.008	-1.156
YD	포함		포함	
IND	포함		포함	
F-value	58.475***		53.172***	
adj R^2	0.299		0.298	

- 1)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15>와 동일함.

4.2.4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위험

< 표 24 >는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위험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가설4의 검증결과이다. 내부감사품질(IAQ)는 외부감사위험(RISK)와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외부감사위험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감사위험을 측정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감리지적, 재무제표 수정,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감사위험 대응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면 오류나 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감소하게 되고, 감사인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고하지 못할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이다. 기업은 재무제표 제작성 정도가 낮아지므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높여주고, 기업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낮추어 상장폐지실질심사 가능성을 낮추고, 감사인은 감리지적 발생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변수와 감사위험의 관계분석인 식(10)의 결과는 EXP와 IA가 RISK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능력과 경력이 있는 내부감사인이 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왜곡과 부정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외부감사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내부감사인원수가 많을수록 적시검토와 업무분담이 효율적이므로 외부감사인이 부담해야 하는 감사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율(IRISK), 총자산이익률(ROA), 임원지분율(MANSR)은 감사위험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 값들이 크면 감사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석된다. 종속자회사 수(SBSUB), 부채비율(LEV), 감사인교체(AUDCH)는 감사위험과 양(+)의 관계를 보인다. 종속자회사 수가 많으면 업무가 많고 복잡하여 단순하고 소규모인 기업보다 감사위험은 늘

어날 것이다. 교체된 감사인이 계속계약을 목적으로 느슨한 감사를 할 경우 감사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감리지적 발생확률이 줄어들고, 재무제표 재작성이 줄어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고의적인 오류와 오류수정은 회계부정 및 감리대상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재무제표 수정은 회계분식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내부감사가 잘 이루어질 때 오류와 오류수정 및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회계부정이나 회계분식이 없다면 감리지적 위험도 줄어들 것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원인은 매출액 미달, 영업손실, 자본잠식, 부적정 감사의견, 불성실공시 및 횡령 등이다. 기업 내부감사나 내부회계관리에서 오류나 부정을 잘 감시하고 예방해준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같은 위험은 발생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 표 24 > 회귀분석 : 가설4의 검증결과

RISK	내부감사품질		개별 분석	
	coef.	t-value	coef.	t-value
(상수)	0.065	0.395	0.023	0.097
IAQ	-0.024	-1.962**		
STATUS			-0.016	-1.177
EXP			-0.051	-2.604***
IA			-0.069	-2.781***
SCOPE			0.015	0.833
SIZE	-0.007	-1.050	-0.004	-0.522
IRISK	-0.108	-2.079**	-0.108	-2.081**
SBSUB	0.014	3.301***	0.014	3.383***
LEV	0.160	4.739***	0.175	4.596***
ROA	-0.401	-4.395***	-0.402	-4.397***
AGE	0.008	0.650	0.007	0.563
BIG4	-0.016	-1.030	-0.016	-1.046
AUDCH	0.051	2.621***	0.050	2.586***
OPIN	0.229	1.482	0.228	1.473
MANSR	-0.120	-2.174**	-0.125	-2.253**
DUAL	0.007	0.400	0.005	0.295
YD	포함		포함	
IND	포함		포함	
F-value	13.292***		12.373***	
adj R^2	0.071		0.072	

1)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15>와 동일함.

4.2.5 외부감사위험의 로지스틱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이므로 독립변수와의 관계성은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감사위험의 경우 감리지적, 재무제표 수정 및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측정하였는데, 이 세 가지의 값이 매우 적어 회귀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관계성을 검증함이 타당할 것이다. 감리지적, 재무제표 수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모두 이분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 표 24 >로 제시하였다. 전체 분석 표본 수 4,819개 중 ①감리지적은 23개/4,796개, ②재무제표 수정은 1,174개/3,645개, ③상장폐지 실질심사는 40개/4,779개의 비율임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내부감사품질(IAQ)는 감리지적, 재무제표 수정, 상장폐지실질심사와 모두 음(-)의 관계이나, 재무제표 수정만 유의한 관계이다. 내부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재무제표 작성오류가 줄어들어 재무제표 수정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각각의 특성별 분석에서 전문성(EXP)과 규모(IA)가 재무제표 수정과 음(-)의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내부감사인도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내부감사인인 수도 적정하게 갖출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EXP)이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음(-)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전문성이 높을수록 상장폐지실질심사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귀분석과 유사한 결과이다. < 표 24 >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내부감사품질(IAQ)와 전문성(EXP) 및 규모(IA)가 감사위험(RISK)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 표 25 >의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내부감사품질(IAQ)와 전문성(EXP) 및 규모(IA)가 RISK의 측정치인 재무제표 수정과 상장폐지실질심사와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방법을 달리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됨이 확인되었다.

< 표 25 > RISK(감사위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감리지적		재무제표수정		실질심사	
	IAQ	특성별	IAQ	특성별	IAQ	특성별
IAQ	-0.076 0.053		-0.101 3.728*	3.015	-0.204 0.557	0.064
STATUS		0.336 0.496		-0.092 1.360		-0.102 0.064
EXP		-0.701 1.027		-0.246 5.002**		-0.995 3.015*
IA		-1.349 2.157		-0.373 7.141***		-0.297 0.187
SCOPE		-0.412 0.448		0.088 0.787		0.033 0.004
SIZE	-0.263 1.430	-0.178 0.611	-0.011 0.088	0.013 0.126	-0.490 7.380***	-0.469 6.496**
IRISK	-1.898 1.012	-1.644 0.757	-0.401 1.923	-0.400 1.906	-2.846 3.989**	-2.742 3.640*
SBSUB	0.276 8.047***	0.315 9.637***	0.063 7.762***	0.065 8.267***	0.064 0.301	0.087 0.526
LEV	2.923 5.555**	3.115 6.050**	0.668 10.276***	0.641 9.341***	6.747 40.238***	6.701 39.231***
ROA	-1.86 0.736	-1.941 0.776	-2.023 17.320***	-2.028 17.252***	1.633 1.017	1.458 0.806
AGE	0.331 0.439	0.401 0.647	0.008 0.013	0.005 0.005	1.259 5.082**	1.222 4.856**
BIG4	-0.609 1.283	-0.637 1.402	-0.088 1.086	-0.089 1.092	-0.073 0.033	-0.081 0.041
AUDCH	0.820 2.472	0.772 2.196	0.154 2.194	0.149 2.051	1.251 10.562***	1.260 10.634***
OPIN	16.449 0.000	16.216 0.000	1.993 3.146*	1.979 3.108*	-0.389 0.088	-0.419 0.100
MANSR	-3.231 1.489	-3.075 1.378	-0.478 2.267	-0.515 2.587	-7.883 7.929***	-7.597 7.379***
DUAL	0.526 0.364	0.588 0.464	0.039 0.137	0.028 0.073	-0.218 0.110	-0.19 0.081
모형	45.968	50.411	338.828	349.034	125.708	128.455
Nagelkerke R ²	0.162	0.177	0.101	0.104	0.281	0.287
-2LL	245.765	241.322	5011.224	5001.017	337.241	-334.495

주1) 괄호안은 Wald통계량임. ***,**, * 는 1%, 5%, 10% 유의수준.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15>와 같음.

4.3 분석 결과 종합해석

본 연구의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성과 방향성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부호가 일관적일 때 데이터와 통계분석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분석결과, 내부감사품질은 회귀분석에서 TIME, FEE, RISK에 음(-)의 유의한 관계이다. 내부감사품질이 커질수록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위험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내부감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인원과 예산적 지원이 많을 때와 업무범위가 넓을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와 감사위험을 낮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성별 분석에서 독립성은 상관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에서 모두 TIME, FEE, RISK와 음(-)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 보고라인이 경영층이 아닌 감사와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일 때 독립성은 확보되고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위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횡령과 배임 등은 주로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관련되고, 회계부정에 최고경영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감사나 이사회에 하는 것이 감사효율을 위해 더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전문성은 RISK의 모든 분석에서 음(-)의 유의한 결과이다. 내부감사인원이 전문자격증과 경력 등의 전문능력을 갖추면 감사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성 있는 내부감사인원이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계 오류나 부정을 더 잘 발견하여 감사위험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 다만 상관분석 및 차이분석이 회귀분석과 다른 방향

성이 나타났다.

셋째, 규모는 회귀분석에서 TIME과 RISK와 음(-)의 관계성이 나타났다. 내부감사지원인의 수가 많을수록, 내부감사인의 급여가 중위수 이상일수록 감사시간과 감사위험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내부감사인의 수가 많고 내부감사에 사용할 예산이 많으면 적절한 업무분담과 적시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감사시간이 감소하고 감사위험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규모가 감사시간의 감소와 관련있음이 증명되었다. 상관분석과 차이분석에서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넷째, 범위는 방향성과 유의성이 혼재되어 있다. 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FEE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범위가 넓을수록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내부감사인의 감사범위가 넓어지면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고, 감사위험을 감소하여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게 되므로 감사보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 가지 분석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성과 방향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내부감사품질 측정이 측정치(Proxy)로서 사용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26 > 분석 결과 종합

	TIME				FEE				DA				RISK			
	상 관	차 이	회 귀	로 짓	상 관	차 이	회 귀	로 짓	상 관	차 이	회 귀	로 짓	상 관	차 이	회 귀	로 짓
IAQ	▲		▼		▲		▼						▼		▼	▼
STATUS	▼	▼	▼		▼	▼	▼							▼		
EXP	▲	▲			▲	▲			▲	▲			▼	▼	▼	▼
IA	▲	▲	▼		▲	▲			▼	▼					▼	▼
SCOPE		▲				▼	▼									
▲ : 유의한 양(+)의 관계, ▼ : 유의한 음(-)의 관계,																

V. 결론

5.1 연구요약

본 연구는 내부감사품질을 구성하는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 등의 특성변수가 외부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부감사품질은 내부감사품질 측정에 관한 국내연구가 없기 때문에, 국제내부감사기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내부감사품질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외국의 선행연구가 검증했던 변수들을 참조하여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내부감사에 관한 자료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공개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전자공시자료인 DART의 사업보고서에서 수작업(handly collection)으로 최대한 추출하여 이를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시간과 음(-)의 관계로 나타나 내부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외부감사시간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기업 자체적으로 정화작용이 되어 오류와 취약점이 완화되어 외부감사의 감사노력을 줄여주므로 외부감사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내부감사품질의 개별특성 변수에서는 독립성과 규모가 감사시간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 최고책임자가 감사지적사항을 감사와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외부감사시간 감소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감사·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사이의 의견교환을 담당하는 지위이므로 내부감사가 경영진보다 감사위원회와 소통할 때 감사시간 감소와 감사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내부감사인원수가 많을수록 업무분담과 적시검토가 가능하여 내부감사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보수와 음(-)의 관계가 있어 내부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외부감사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의 업무범위와 시간을 줄여주어 외부감사의 작업량은 줄어들고 외부감사보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독립변수로는 독립성과 범위가 외부감사보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품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품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부감사품질과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의 상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내부감사품질은 외부감사위험과 음(-)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내부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외부감사위험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고의적인 회계오류와 그 오류수정이 회계부정 및 감리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수정은 회계분식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품질이 높으면 감리지적 발생확률이 줄어들고, 재무제표 재작성이 줄어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있는 내부감사인원이 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아 회계오류와 부정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능력있는 내부감사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한 적시검토가 가능하여 감사위험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내부감사품질이 양호하면 외부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피감사 기업에게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감사위험은 피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수한 내부감사품질이 감사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피감사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의 관련성 검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감리지적 등의 시장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감사비용을 줄여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감사비용을 줄이면서도 감사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할 것이다. 즉, 기업은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실증분석 결과가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와 감사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에 기여하여 외부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내부감사품질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더 투명하고 더 신뢰성있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감사를 보강하고 내부감사를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내부감사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기업과 감사인과 정보이용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5.2 시사점 및 공헌점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감사품을 측정하고 그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시

의적인 공헌성이 있다고 본다. 내부감사가 기업 내에서 하는 감사라서 외부에 공시되는 자료의 한계로 그동안 내부감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연구는 더더욱 부족하였다.

본 연구가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여 외부감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내부감사품질의 측정을 시도하여 내부감사품질을 평가할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외부감사와의 이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 나아가 내부감사품질 측정으로 다른 더 의미 있는 기대를 해볼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이 회계학분야에 기여할 만하다. 이와 같은 시도와 결과는 후속 연구에 기준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의 측정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계속적인 연구로 내부감사품질이 좀 더 정밀해지기를 바란다.

본 논문은 외부감사의 기능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이므로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에 관해 논지를 전개하였다. 외부감사라는 한정된 주제를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외부감사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인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을 한 연구에서 모두 다루면서 감사기관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기여할 만하다.

5.3 향후 연구과제와 제언

본 연구는 내부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 등의 특성변수와 외부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비록 선행연구에서의 방법론을 준용하고 확장한

타당성을 담보하였을지라도,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의 특성을 규정하는 각 변수의 측정 및 정의가 본 연구에만 한정된 방법론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 내부감사와 내부통제가 기업 내 전방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나아가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와 기업가치,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기업실패, 대리인문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와 내부감사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감히 예측해 보건대,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갈수록 기업의 역할은 사회적 공헌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기업이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외부감사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업 내에 부정·비리가 있을 경우 불매운동이나 감리지적 및 시장 조치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내부감사 확대비용이 외부감사 추가 비용보다 더 크더라도 더 큰 가치를 위해 내부감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더 많은 내부감사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보이용자와 투자자 등이 의사결정 하는데 유용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옥석을 가려 투자할 수 있다. 부정과 부패를 감추고, 주주의 이익이 하락하고, 회사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보고라인의 29%만 감사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또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사이버신고선을 운영하는 기업이 60%를 넘지만 이 신고는 경영자에게 보고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내부감사지원인의 수가 4%만 공시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내부감사지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그 직무범위와 책임범위 등을 규정할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기업(예:한전KPS)의 경우 감사종류별 실시내역 횟수(종합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와 감사지적 건 및 조치내역(행정상 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신분상조치(명))을 보고하고 있다. 사기업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운 일 일수도 있지만, 경영진과 임직원에게는 더 투명하게 지켜야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감사인의 약력, 경력, 자격 등을 공시하듯 내부감사인에 관한 사항도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부감사인이 명성관리를 위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이 개선되면 내부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내부감사 자체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편, 제409조, 제415조, 제542의10, 제542조의1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5&efYd=2018121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34&efYd=20181101#J22:0>

국제내부감사협회, 국제내부감사기준.

<https://na.theiia.org/standards-guidance/mandatory-guidance/Pages/Standards.aspx>

x

권수영, 김문철,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47-76. <http://e-kar.org/>

권수영, 김효은, 정경철 (2018), 감사파트너의 비정상 감사시간 및 감사시간 비중이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0권 제4호: 341-378. <https://www.kicpa.or.kr/>

금융감독원 회계포털, 내부감사의 효율적 운운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황성식, 2001.6.30.

<http://acct.fss.or.kr/fss/acc/bbs/view.jsp?page=2&url=/fss/ac/1295497378262&bbsid=1295497378262&idx=2061&num=13>

금융위원회(금융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2017.10.31. 전부개정, 2018.11.1. 시행], 201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2018, 보도자료 (2019.2.14.).

김동영 (2019), 경제정의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의

- 특성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32권 제6호: 1087-1107. <https://doi.org/10.18032/kaaba.2019.32.6.1087>
- 김문태, 이지현 (2012),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와 이익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4호: 35-56.
- 김석웅, 유순미 (2011), 회계부정: 방지와 적발, 한국, 산문출판.
- 김수인 (2016), 회계부정위험과 외부회계감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승열 (2010),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9-58.
- 김연화 (2014), 상장폐지기업의 감사인 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7: 241-26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104563>
- 김지령, 권선국 (2013), 전기오류수정을 재작성하는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1호: 217-240.
- 김현진, 김정교, 유순미 (2013), 감리지적 예측확률로 측정한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47집: 229-264.
- 김현진 (2014),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실패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정보연구*, 제33권 제1호: 173-190.
- 김흥기 (2019), 현행 주식회사의 감사시스템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1-38.
- 김확열, 김효주 (2019), 내부감사기구의 자발적 설치 요인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9권 제3호: 1-28.
<https://doi.org/10.29189/KAIAJFAI.19.3.1>
- 김확열, 김효주 (2019), 내부감사품질이 외부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9권 제4호: 23-44.

<https://doi.org/10.29189/KAIAJFAI.19.4.2>

나종길, 최기호 (2006), 회계감사인 의 산업별 전문성과 회계감사보수와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33-67.

노준화, 배길수 (2008), 적정감사보수와 정감사투입시간에 대한 감사인들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1-26.

<http://www.kaa-edu.or.kr/>

류승우, 이종천, 김응길, 한승수 (2015),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0권 제4호:

213-246. <http://e-kar.org/>

류예린, 지상현, 어일선 (2018),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 *재무회계정보저널*, 제18권 제1호 :21-49.

<https://doi.org/10.29189/KAIAJFAI.18.1.2>

마희영, 권수영, 정지연 (2012),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을 활용한 감사품질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21권 제1호: 259-287.

마희영, 박성중, 하광복, 이만우 (2012),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이 감리지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2호: 91-113.

박성환, 김유찬, 김영길 (2011), 상장폐지기업의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35-61.

박재완, 이상철, 정갑수 (2010), 감사위험과 감사보수의 관련성, *경영학연구*, 제39권 제3호: 633-66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079805>

박재환, 김승준 (2015), 감사인은 내부자 거래를 감사위험으로 인식하는가?, *회계저널*, 제24권 제1호: 151-180.

박정섭 (2019),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한국, *조세신보사*.

- 박진우 (2011), 내부 전산감사 실시가 감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아주대학교*.
- 박태수 (2017), 내부통제 평가와 적발감사 실무, 한국, *북랩*.
- 배길수, 최승욱 (2019),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고품질 감사에 대한 수요와 감사인이 인지하는 감사위험: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3호: 63-99.
- 배한수, 권선국 (2015),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과 기업지배구조가 자산회령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4권 제6호: 1759-1783.
<http://dx.doi.org/10.17287/kmr.2015.44.6.1759>
-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내부감사부서의 현재와 미래,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8.04, Vol. 6.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ACI, (2018), '2017년 상장법인의 내부감사부서 편제 현황' Vol. 6. May.
- 서윤석, 한중수, 신보성, 안정인 (2018),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와 외부감사에 관한 연구: 직급별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3권 제1호: 81-117.
<http://dx.doi.org/10.24056/KAR.2018.02.003>
- 손성규 (2004), 외부감사인의 내부감사의존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3권 제1호: 1-42.
- 신상훈, 김선미 (2015), 내부 감사와 이익조정과의 계에 한 연구 - 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7권 제3호: 1-24.
- 신상훈, 차승민 (2018), 내부감사 품질과 조세회피, *세무와 회계연구*, 제7권 제1호: 383-412.
- 신용준, 김은 (2010), 소송위험과 채무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 제15권 제2호: 143-166.
- 양일수, 이재은 (2016), K-IFRS 도입 전·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기업과 감사시간·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의 관련성, *회계저널*, 제25권 제1호: 71-115.
- 이경태, 손성규, 최종원 (2007),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53-79.
- 이명곤, 이세철, 장석진 (200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73-104.
- 이명곤, 인창열, 최지환 (2019), 내/외부 감시비용과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회계저널*, 제29권 제1호: 93-120.
<http://dx.doi.org/10.24056/KAJ.2019.12.003>
- 이석근, 조광희, 양동훈 (2016), 상장폐지기업의 상장폐지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181-203.
- 이성욱, 김영길, 김유찬 (2014), 횡령 및 배임사건이 보고이익에 대한 투자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3권 제4호: 111-153.
- 이세용, 송혁준 (2005),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비감사서비스와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0권 제1호 : 239-271.
- 이우재, 정석우 (2016),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에 따른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 구매의사결정과 감사품질, *경영학연구*, 제45권 제1호: 1-33. <http://dx.doi.org/10.17287/kmr.2016.45.1.1>
- 이준일, 최선화, 최종학 (2014), 내부회계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와 감사보수와의 관계, *회계와 감사 연구*, 제51호: 191-225.
- 이준일, 선우혜정, 최종학 (2016),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미래 연구방향의 제안, *회계학연구*, 제41권 제5호: 201-268.

- 이창우, 전규안, 김갑순 (1997), 회계감사의 환경변화와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 전병욱 (2018), 감사투입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0권 제4호: 411-439.
- 전홍민 (2013), 경영자 지분율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105-126.
- 정남철 (2018), 감사인의 공시 불일치, 감사인 대응 그리고 감사품질,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석우, 정광화 (2015), 회계법인의 내부심리업무와 감사품질, *회계와정책연구*, 제20권 제6호: 31-5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85303>
- 정영기 (2012),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1집: 293-322. <http://www.kiaa.or.kr/>
- 정재연 (2012), 회계법인의 규모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3호: 329-353.
- 정재욱, 김진희, 임태균 (2009), 감사특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4권 제3호: 1-24.
- 정태섭 (2013), 횡령·배임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정태진, 최가영, 최종학 (2019), 대형 회계법인의 합병과 감사품질의 변화, *회계학연구*, 제44권 제1호: 155-190.
<http://dx.doi.org/10.24056/KAR.2019.02.003>
- 정현욱 (2013), 지주회사 전환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지현미, 최영곤 (2019), 리스크 기반 ISA 회계감사, 한국, *삼영사*.
- 최관,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49-75.
- 최승호 (2009), 내부회계관리제도 품질과 감사품질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56호: 227-246.
- 최승호 (2009), 감사위원회 특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재무제표 재작성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 561-582.
- 최종학, 정희선 (2015), 감사의견 구매 목적의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하락, *경영학연구*, 제44권 제6호: 1575-1607.
<http://dx.doi.org/10.17287/kmr.2015.44.6.1575>
- 하석태, 조성표 (2018), 감사인의 명성효과와 타 감사인에 대한 전이효과, *회계학연구*, 제43권 제3호: 149-182.
<http://dx.doi.org/10.24056/KAR.2018.05.001>
- 한국감사협회, <http://www.theia.kr/>
- 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저널, (2016), January 50-53.
- 한국감사협회, 감사저널, (2017), 봄호 71-88.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005.1.21. 제정, 2016.12.28. 최종개정), 2016a,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05.1.21. 제정, 2016.12.28. 최종개정), 2016b, 한국거래소.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 「회계감사기준」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의결 : 2013.8.20)”, 2013,
- 한만조 (2018), 상장폐지 위험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회계감사기준위원회, 「회계감사기준」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
 인의 책임 (의결 : 2017.12.13)”, 2017, 한국공인회계사회.

- 陶玉俠 (2016), 中國上市公司內部監事運行效果研究, 中國, 經濟科學出版社.
- 王守海, 楊亞軍 (2010), 內部監事質量与 監事費用研究-基于中國上市公司的證據, *監事研究*, 2009年 第5期: 65-73.
- 李嘉明 (2016), 內部監事的作用機理和治理效果, 中國, 重慶大學出版社.
- Abbott. L., S. Parker, G. F. Peters (2012), Audit Fee Reductions from Internal Audit Provided Assistance: The Incremental Impact of Internal Audit Characteristic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9(1): 94 - 118.
<http://lps3.doi.org.libproxy.pknu.ac.kr/10.1111/j.1911-3846.2011.01072.x>
- AL-Twaijry. A. M., J. A. Brierley, D. R. Gwilliam (2003), "The Development of Internal Audit in Saudi Arabia: An Institutional Theory Perspective Abdulrahman",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14: 507-531. doi:10.1016/S1045-2354(02)00158-2
- Chapple, L., C. Ferguson, and D. Kang. (2007), Corporate Governance and Misappropriation, *Working Paper Series*. (SSRN 1011936)
<http://dx.doi.org/10.2139/ssrn.1011936>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183-199.
[http://lps3.doi.org.libproxy.pknu.ac.kr/10.1016/0165-4101\(81\)90002-1](http://lps3.doi.org.libproxy.pknu.ac.kr/10.1016/0165-4101(81)90002-1)
- Dechow, P., R. Sloan,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Review*, 70(2): 193-225.
<https://www.jstor.org/stable/248303>
- Felix, W. L., A. A. Gramling, M. J. Maletta (2001), "The Contribution of Internal Audit as a Determinant of External Audit Fees and Factors Influencing This Contribu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3):

- 513-534. <https://doi.org/10.1111/1475-679X.00026>
- Goodwin-Stewart. J., P. Kent (2006), Relation between external audit fees,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audit, *Accounting and Finance*, 46: 387-404.
<https://doi.org/10.1111/j.1467-629X.2006.00174.x>
- Gramling A. A., S. D. Vandervelde (2006), Assessing Internal Audit Quality, *Internal Auditing*, 21(3): 26-33.
<http://digitalcommons.kennesaw.edu/facpubs>
- Krishnan J. (2005),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80(2): 649-675.
<https://doi.org/10.2308/accr.2005.80.2.649>
- Lee H. Y., and H. Y. Park (2016),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udit and external audit hours: evidence from S. Korea, *Managerial Auditing Journal*, 31(6/7): 629-654,
 DOI 10.1108/MAJ-05-2015-1193
- Mazza T., S. Azzali (2015), Effects of Internal Audit Quality on the Severity and Persistence of Controls Defici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19: 148 - 165. doi:10.1111/ijau.12044
- Myllymaki E. (2014), The Persistence in the Association between Section 404 Material Weaknesse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3(1): 93-116.
 DOI: 10.2308/ajpt-50570
- Palmrose. Zoe-Vonna.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1): 97-110. DOI: 10.2307/2490806

- Prawitt D. F., J. L. Smith, D. A. Wood (2009), Internal Audit Quality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84(4): 1255-1280. <https://doi.org/10.2308/accr.2009.84.4.1255>
- Prawitt D. F., N. Y. Sharp, D. A. Wood (2011), Reconciling Archival and Experimental Research: Does Internal Audit Contribution Affect the External Audit Fee?,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23(2): 187-206. DOI: 10.2308/bria-10065
- Raiborn, C., J. B. Butler, K. Martin, M. Pizzini. (2017), The Internal Audit Function: A Prerequisite for Good Governance, *The Journal of Corporate Accounting & Finance*, January/February: 10-22. <https://doi.org/10.1002/jcaf>
- Roussy M., M. Brivot (2016), Internal audit quality: a polysemous motion?,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29(5): 714-738. DOI 10.1108/AAAJ-10-2014-1843
- Sally-Anne Pitt (2016), 내부감사품질관리, 한국, 연암사.
- Wallace, W. A. (1984), Internal auditors can cut outside CPA cost, *Havard Business Review*, 52(1): 34-38.
- Yasin F. M., S. P. Nelson (2012), Audit committee and Internal audit: Implications on Audit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Management and Accounting*, 20(2): 187-218. <https://journals.iium.edu.my/enmjjournal/index.php/enmj/article/view/216>
- Zain, M. M., M. Zaman. M. Z. Mohamed (2015), The Effect of Internal Audit Function Quality and Internal Audit Contribution to External Audit on Audit Fees,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19: 134-147. DOI:10.1111/ijau.12043.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

김 효 주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여 외부감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부감사 품질 측정치(proxy)가 외부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외부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정보이용자는 이를 신뢰하여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한다. 최근 법 개정이 감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회계에 있는 수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부감사도 중요하고, 내부감사의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므로 내부감사품질과 외부감사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본 연구는 내부감사에 관한 국제기준, 국내기준 및 규정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여 IAQ로 정의하였다. 측정된 IAQ와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IAQ를 명확하게 실증하기 위해 내부감사품질을 독립성, 전문성, 규모, 범위로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이들 특성과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위험과 관계를 2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감사품질 IAQ가 외부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위험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면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위험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특성별 분석에서 독립성은 감사시간, 감사보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규모는 감사시간, 감사위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성은 감사위험을 감소시키고, 범위는 감사보수 감소와 관련이 있다. 내부감사품질이 우수하면 외부감사에 기여하여 외부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주게 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내부감사품질 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상호 협력과 보완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과 감사인과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외부감사에 기여하기 위함보다는 기업 내부정·비리가 있을 경우 불매운동, 감리지적, 시장조치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의 더 큰 가치를 위해 내부감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감사의 글

오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됨이 매우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하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먼저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3년 반의 박사과정 동안 지도해주신 김확열 지도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치도 없고 철도 없는 저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을 지도교수님께 마음으로 갚아야 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자랑스런 제자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소소한 것까지도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정현욱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부족하나마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위논문은 영원히 남는 거라시며 꼼꼼히 읽어주시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문태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하시며 따뜻한 조언해주신 김진황 교수님과 이진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통화했던 동기 유미옥님, 항상 이프로 부족한 동생을 위해 마음 써준 인자 언니, 든든하게 이끌어 준 여오빠 감사합니다. 선배로서 길잡이가 되어 준 최수영 교수님, 문상현 박사님, 도경분 박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님과 후배님 모두 감사합니다.

늘 지적 한계를 느꼈지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김교수”라고 불러주신 나를 제일 사랑해주시는 나의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 자랑스런 딸이 되고 싶어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더 자랑스런

딸이 되겠습니다 엄마. 3년 동안은 공부하게 해준다면 혼자 이역만리를 다니며 고생한 남편 김태훈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배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같이 행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큰아들 김지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하나부터 열까지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아들이 손수 DART에서 찾아줘서 어머니가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내 논문의 절반은 내지훈의 업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막내 김재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안계시고 형도 멀리 살기에 같이 사는 아들이 그 많은 푸념과 낙두리 다 받아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학위과정 동안 버틸수 있도록 위안이 되어준 친구같은 아들인 내재원 사랑합니다. 이제는 졸업합니다. 이론과 실무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랑하는 내동생 김성태 팀장님 감사합니다. 논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해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 어려운 주제를 능히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도움주고 힘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김 효 주